

외국법령 2010-2

영국의 Barrister와 Solicitor의 관계 연구

한국세무사회 부설 조세연구소

목 차

I. 서론	1
II. 영국에서 법률전문가의 발전	2
1. 13세기의 법률가	2
2. 15세기의 법률가	5
3. 16세기부터 18세기의 법률전문가	7
4. 18세기와 19세기의 법률교육	9
5. 1900년대의 법률교육개관	11
1) Solicitor의 교육	11
2) Barrister의 교육	12
III. 1990년 이전의 사법개혁의 움직임	13
1. 19세기때 등장한 개혁안들	13
2. Benson의 보고서	15
3. 민사정의심의위원회(Civil Justice Review Committee)	17
4. Marre 위원회 보고서 (The Marre Committee Report)	18
IV. 1989년 대법관의 그린보고서(녹서) (THE LORD CHANCELLOR'S 1989 GREEN PAPER PROPOSALS)	20
1. 그린 보고서(The Green Papers)	22
1) 법학교육	22
2) 전문성기준과 업무기준(Professional Standards and Conduct)	23
3) 변론(Advocacy)	24
4) 직접적 접촉 (Direct Access)	25
5) 왕실고문변호사단 (Queen's Counsel: QC)	25
6) 사법부(The Judiciary)	26

7) Barrister의 실무업무	27
8) 다양한 분야와 다양한 국가에서 실무수행(Multi-Disciplinary and Multi-National Practices)	27
9) 광고(Advertising)	28
10) 유언검인(Probate)	28
11) 승소사례금(Contingency Fees)	28
12) 부동산양도절차(Conveyancing)	29

V. 그린보고서(녹서)에 대한 반응29

1. Barrister협회(General Council of the Bar)	29
2. Barristers의 사무보조원협회 (The Barristers' Clerks' Association: BCA)	32
3. Solicitor협회 (The Law Society)	33
4. 다른 법률단체들	35
5. 대학교, 학생 그리고 교수(Tutors)	36
6. 상업기관들(Commercial Organizations)	37
7. 귀족원(House of Lords)	37
8. 미국의 반응(American Responses)	38

VI. 백서(THE WHITE PAPER)39

1. 백서의 주요내용	39
1) 법학교육과 업무윤리(Legal Education and Conduct)	39
2) 사법부(The Judiciary)	40
3) 법정변론권(Rights of Audience)	41
4) 왕립자문변호인단(Queen's Counsel: QC)	41
5) 직접적 접촉(Direct Access)	41
6) 복합업무수행와 다국가적 업무수행(Multi-Disciplinary and Multi-National Practices)	42
7) 유언집행(Probate)	42
8) 승소사례금(Contingency Fees)	42

9) 부동산양도업무(Conveyancing)	42
2. 백서에 대한 반응	43

VII. 1990년 이후의 법률전문가 관련 제도발전46

1. 1990년 법원과 법률서비스 법(THE COURTS AND LEGAL SERVICES ACT 1990)	46
1) 법안의 제출과 경과	46
2) 1990년 법의 주요내용(Court and Legal Services Act 1990)	47
2. 1999년 법률조력에 관한 법(Access to Justice Act 1999)	49
3. 2007년 법률서비스법(Legal Services Act 2007)	49
4. 법률관련업무수행에 대한 현재의 모습	50
5. 허가받은 단체 (Licensed Bodies)	53

VIII. Solicitors와 Barristers의 업무54

1. Solicitors	54
1) 송무수행권(The right to conduct litigation)	55
2) 다른 독점권들: 부동산양도 및 유언집행	56
3) 법정변론권(Rights of audience)	57
4) Solicitors와 고객의 관계	59
2. Barristers	61
1) Inns of Court와 Bar에 가입	61
2) Bar에서 실무업무 (Practice at the bar)	63
3) Barrister와 고객의 관계	65
4) 고용된 barristers	66

IX. 영국에서 Solicitors와 Barristers양성과정68

1. 영국법조인양성제도 개관	68
2. Solicitors양성과정	69
1) 학위과정 (Academic stage)	70
2) 전공전환과정(Conversion Course)	74
3) 실무교육과정	74

4) 수습계약(training contract)	75
3. Barristers양성과정	78
1) 학문과정(Academic Stage)	78
2) Barrister의 실무교육 (Bar Vocational Course: BVC) 또는 BPTC	79
3) 견습기간(pupillage)	82
 X. Solicitors와 Barrister의 기능중복과 융합	84

I. 서론

법률과 관련된 업무는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많은 다른 직업과 관련되어 있다.¹⁾ 법률문제를 다루는 직업에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무원(paralegal workers), 등록된 부동산거래전문가(licensed conveyancers) 그리고 전문분야의 법률사무를 수행하는 사무원(qualified legal executive) 등이 있다. 또한 회계사(accountants)처럼 조세법(tax and revenue law)분야를 특화한 직업들도 있다. 하지만 영국에서 변호사(lawyer)와 법률전문가(legal profession)는 대체로 다음의 2가지 직업군을 의미한다.²⁾ 하나는 법정변호사(Barrister)이고 다른 하나는 사무변호사(Solicitor)이다.³⁾ 영국의 법체계는 하나의 법률전문가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다른 전문가그룹으로 이루어져 있는 아주 독특한 체계이다. Barristers와 solicitors는 영국역사의 발전과 함께 발달한 직업군이다. 그러므로 동 법률전문가의 출현과 분화 그리고 수행하는 업무를 알기 위해서는 영국사법제도의 변화를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1980년대 이후 영국에서는 전통적 barristers와 solicitors로 분화되었던 법률전문가체계에 대하여 법률서비스를 받는 소비자인 일반대중들의 비판적 의견이 비등하기 시작하여 양 법률전문가의 통합문제가 심도 있게 논의 되었다.

그 결과로서 1990년 Courts and Legal Services Act와 1999년 Access to Justice Act가 시행되었고 두 전문직업군 사이의 구별은 점점 벌어지게 되었다.

1) Jacqueline Martin & Chris Turner, Unlocking the English Legal System, Hodder Education, 2008, 307면.

2) 앞의 글, 307면.

3) Tim Vollans & Genn Asquith, English legal system,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105면.

II. 영국에서 법률전문가의 발전⁴⁾

영국에서 barristers와 solicitors의 구별은 역사적으로 Edward I세 때부터 최근에까지 유지 되어 왔으며 1989년 이후 일반대중과 전문가들에 의해 구별필요성에 대한 의문과 면밀한 검토(scrutiny)의 대상이 되고 있다.⁵⁾ 영국에서 현재까지 유지되었던 Barrister와 Solicitors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발전과 변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동 직업군은 13세기에 발전하기 시작하였고 15세기와 16세기를 거치면서 아주 정교한 구조(fairly elaborate structures)로 교육과 규제방식이 발전하였으며, 17세기 중반에는 교육방식이 붕괴하였다가 18세기 후반과 19세기 다시 전문가정신(professionalism)이 출현하였다.

1. 13세기의 법률가

영국의 보통법 법원(English common law courts)이 헨리 3세(King Henry III)가 통치하던 1216에서 1272사이에 주로 형성되었지만⁶⁾, 법률전문가들은 헨리 3세의 손자의 손자인 헨리 6세(Henry VI)의 통치시기 이후에 발전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⁷⁾

에드워드 1세(Edward I)의 통치시기에, 두 종류의 실무변호사(practicing lawyers)가 있었는데 하나는 attorneys였고 다른 하나는 pleaders였다.⁸⁾ attorney는 다른 사람을 변호(represent)할 수 있었지만 일

4) 전체적인 내용은 MJ Quinn, REFORM OF THE LEGAL PROFESSION IN ENGLAND AND WALES, 12 N.Y.L. Sch. J. Int'l & Comp. L. 237, 239면 이하 그리고 J.H Baker, An Introduction to English Legal History, 4ed, Butterworths, 2002, 155면 이하를 주로 참조.

5) MJ Quinn, 앞의 글, 237면.

6) 그의 재위기간인 1272년에는 Wales지방은 잉글랜드의 영토가 되지 못했고 the Statutum Wallie의 법(legislative code)도 아직 발효되지 않았다. 1 F. POLLOCK & F. MAITLAND, THE HISTORY OF ENGLISH LAW 220-21 (2d ed. 1968).

7) R. POUND, THE LAWYER FROM ANTIQUITY TO MODERN TIMES 78 (1953).

반인은 pleader의 “학식, 재주 그리고 열정(learning, ingenuity, and zeal)”을 통해 법정에서 도움을 구할 수도 있었다.⁹⁾ 초기에 Attorney는 법원의 소속원(officer of the court)도 설립된 전문가단체의 소속원도 아니었다.¹⁰⁾

이 시기의 pleaders는 아마도 아주 중요한 사건들에 관련되었을 것이다.¹¹⁾ 법률적 문제에서 변호를 받는 것은 널리 보급되어서 되어서 1259년 런던에서는 특정한 민사사건에서 변호사 없이 자기 사건을 변호(plead)하려고 한다면 국왕의 용인(royal concession)을 받아야만 했다.¹²⁾

에드워드 1세의 아버지는 본인의 사건을 진행하기 위하여 자신의 pleaders와 countors그룹을 보유하고 있었다.¹³⁾ 에드워드 자신의 pleaders는 servants 또는 serjeants at law¹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¹⁵⁾ 그들은 변호사용 흰 직모(coif)를 쓰기 시작하였고 serjeants at law의 특유한 머리장식을 채택하고 있었다.¹⁶⁾ 13세기 말에는 serjeants의 학생(pupils)인 “견습자(apprentices)”라고 불리던 젊은 사람들이 법정에 참여할 수 있는(right of audience in the courts) 독점적인 권리를 획득하였다.¹⁷⁾ “narratores pro rege”(왕을 위한 pleaders)라는 용어도 이시기에 자주 언급되었다. 어떤 serjeants의 지위¹⁸⁾는 아주 대단하여 그들의 법률적 의견은 판사의 의

8) 그 당시 “Attorneys”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변론을 제공하지 않는 변호인(attorney)을 의미하였다. See 2 W. HOLDSWORTH, A HISTORY OF ENGLISH LAW 316 & nn. 1-10 (4th ed. 1936); E. JENKS, A SHORT HISTORY OF ENGLISH LAW (1913).

9) R. POUND, 앞의 글, 78-79면.

10) 1 F. POLLOCK & F. MAITLAND, 앞의 글, 213 면. “아마도 모든 자유민으로 합법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의 attorney로서 나갈 수 있었다. 또한 여성도 attorney가 될 수 있으며, 부인이 그녀의 남편의 attorney로 나설 수 있었다.” Id.

109 Eng. Rep. 1290 (K.B. 1831).

11) 2 W. HOLDSWORTH, 앞의 글, 313면.

12) 1 F. POLLOCK & F. MAITLAND, 앞의 글, 215면.

13) 1 F. POLLOCK & F. MAITLAND, 앞의 글, 215면.

14) 영국의 최고의 법정변호사로 1880년에 폐지됨 지금의 King's Counsel에 해당.

15) Edward 1세의 재위기에는 serjeants과 pleaders사이의 구별이 없었던 것 같다. see 6 W. HOLDSWORTH, 앞의 글, 457-81면; R. POUND, 앞의 글, 111-18면.

16) 2 W. HOLDSWORTH, 앞의 글, 313면.

17) 1 F. POLLOCK & F. MAITLAND, 앞의 글, 216면.

18) 2 W. HOLDSWORTH, 앞의 글, at 313-14; 1 F. POLLOCK & F. MAITLAND, 앞의 글,

견과 동일할 정도로 중요하게 보고되어 졌다.¹⁹⁾

1292년에는 두 법률전문가들은 국왕재판관의 관할(jurisdiction of the king's justices)하에 있었다.²⁰⁾ 1282년에는 런던시장과 부시장(aldermen)은 어떤 attorney와 pleader도 런던시장에 의해 정식으로 공인받지(admitted) 않고는 정기적으로 업무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²¹⁾

런던의 시장과 부시장은 countor가 attorney가 될 수 없도록 금지하여 법률실무가(legal practitioners)의 기능적 차이점을 확고히 하였다.²²⁾

12세기와 13세기에는 교회소속의 법률교육기관(clerical schools of law)이 런던에 운영되기 시작하였다.²³⁾ 헨리 3세가 런던안에 법률교육기관을 금지시키고 교황이 성직자에게 보통법을 가르치는 것을 금지시킨 후²⁴⁾, 학생의 숙박과 교육을 위한 기숙사(hostels)가 런던 밖의 Holborn교외에 발전하였는데 이곳은 Common Pleas(민사법원) 법정이 있었던 영국 의사당(Westminster Hall)을 마주보고 있었다.²⁵⁾ 그러다가 결국 Holborn출신 Lawyer이 Chancery Lane²⁶⁾에 있던 템플기사단(Knights Templars)과 귀족의 대저택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런 Lawyer의 기숙사들이 4개의 법률연수원(the Inns of Courts)이 되었다. 4개의 법률연수원은 the Inner Temple, the Middle Temple, Gray's Inn 그리고 Lincoln's Inn이다.²⁷⁾

10개 또는 그 이상의 Chancery에 있던 기숙사(Inns of Chancery)가 존재하였는데 Inns of Courts와 연계되었거나 그 곳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는 기능을 하였다.²⁸⁾ 하지만 Inns of Chancery는 결국에는 사라지게 되

at 216-17.

19) 2 W. HOLDSWORTH, 앞의 글, at 314; 1 F. POLLOCK & F. MAITLAND, 앞의 글, at 217.

20) 1 F. POLLOCK & F. MAITLAND, 앞의 글, at 216.

21) 1 F. POLLOCK & F. MAITLAND, 앞의 글, at 216.

22) 1 F. POLLOCK & F. MAITLAND, 앞의 글, at 215 & n.1.

23) D. BARTON, THE STORY OF THE INNS OF COURT 4 (1924).

24) 앞의 글, 5면.

25) 앞의 글.

26) Chancery Lane이름은 Chancellor's Lane의 변형이다. Chancellor's Lane은 Chancellor of England중 하나인 Bishop of Chichester의 궁전이 있던 장소에 접하여 있다.

27) Id. at 6.

었고, Inns of Court는 나중에 “Barristers”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변호사를 훈련시키고 입회시키는 것 계속해서 관장하게 되었다.

2. 15세기의 법률가

1442년부터 1461년까지 국왕재판소(King’s Bench)의 재판장이었던 John Forescue정은 헨리 6세 시기의 법률전문가(legal profession)를 판사와 serjeants, 견습자(apprentice) 그리고 attorneys로 3종류의 법률전문가집단으로 구별하였다.²⁹⁾

판사는 serjeants단에서 선발되었다.³⁰⁾ Serjeants는 적어도 16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최고의 변호사들 중 7명 혹은 8명의 명단을 마련하고 그 중에서 칙서(writ)에 의해서 선정하였다. 본 명단은 민사법원(Common Pleas)의 재판장이 준비하고 대법관(Chancellor)에게 제공한다.³¹⁾ Serjeant라는 등급을 받는 것은 왕의 백성에게 봉사(serve the King’s people)하기 위한 선서를 함으로써 공무수행하는 자(public officers)가 되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정의를 뒤로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³²⁾ 실무경력이 있는 변호사들이 Serjeant’s Inn의 회원이 될 때, 당해 lawyer들은 처음에 법정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한 Inn의 회원자격을 포기하여야 한다.³³⁾ 임명식은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데 개인비용으로 치러진다.³⁴⁾ Serjeants에게는 국왕이 고정급을 지급하였고³⁵⁾ 그들은 실크로 만들어진 흰 두건(silk coif)을 착용했다. 실크 두건은 serjeants-at-law가 창설될 때

28) Id. at 9.

29) R. POUND, 앞의 글, at 82. See generally J. FORTESCUE, 앞의 글, 35.

30) R. POUND, 앞의 글, at 82; J. FORTESCUE, 앞의 글, at 127; 6 W. HOLDSWORTH, 앞의 글, at 483.

31) R. POUND, 앞의 글, at 83.

32) Id.

33) D. BARTON, 앞의 글, at 10-11.

34) J. FORTESCUE, 앞의 글, at 123, 125.

35) R. POUND, 앞의 글 11, at 83.

부터 사용된 주요한 의상적 표식(sartorial insignia)이다.³⁶⁾ 20세기의 advocate(barristers)와 달리 serjeants는 고객과 직접적인 접촉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³⁷⁾

결국 Serjeants는 실습자단(body of apprentice)에서 출연하였다.³⁸⁾ 원래 실습자단은 Inns of Court와 Inns of Chancery에서 유래하였고 이들은 평의원(benchers) 또는 전임강사진(readers), 내부(inner) barristers 또는 학생들로 구성되었다.³⁹⁾ Benchers는 Inn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원로들(평의원)이었고⁴⁰⁾ 의회(Parliaments)를 통하여 Inns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제하였다.⁴¹⁾ 14세기까지 내부 barristers는 외부(utter) barrister 또는 상급 학생으로서 benchers를 보좌하고 Bar없이 법정에서 변호할 수 있었던 juniors와 구분되었다.⁴²⁾

Fortescue경이 Lord Chancellor(대법관)로 재직하고 있을 때는 Inns of Court는 귀족에게는 소송비용(cost to the nobility)을 청구할 수 없었다.⁴³⁾

전문적 attorneys는 에드워드 1세(Edward I)의 통치시기에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15세기까지는 apprentices(견습생)도 전문적 attorneys가 될 수 있었고 attorneys는 Inns of Courts들 중 한 곳의 회원자격을 보유할 수 있었다.⁴⁴⁾ 그런데 17세기부터는 attorneys는 더 이상 Inns의 회원이 아니었으며 그 곳에서 공부하지도 않았다.⁴⁵⁾ 당시 Attorneys는 정식의 교육이나 훈련 없이 단지 보통법 법원(common law courts)에서 활동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사람이었다.⁴⁶⁾

36) J. FORTESCUE, 앞의 글 35, at 125.

37) 여기서 "Advocate"는 pleader를 의미한다. pleader는 Inn of Court에 의해 변론할 자격이 부여된 사람을 의미한다. THE LAWBOOK, 앞의 글, at 9.

38) Id. at 84.

39) Id. at 82.

40) R. POUND, 앞의 글, at 85.

41) E. JENKS, 앞의 글, at 200.

42) R. POUND, 앞의 글, at 82, 85.

43) J. FORTESCUE, 앞의 글, at 118-19.

44) 앞의 글.

45) 앞의 글.

3. 16세기부터 18세기의 법률전문가

16세기후반부터 17세기까지, barristers와 solicitors가 되는 자의 구별은 교육, 임명 그리고 훈련방식의 차이에서 나타나게 되었다.⁴⁷⁾ 본인이 실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법원의 근무자(officers of the courts)로서 활동하던 Attorneys는 필연적으로 법률사무(the clerical side of the law)에 종사하게 되었다.⁴⁸⁾ 법률사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교육은 실무적인 적용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졌다. 즉, 통상의 법률서식의 마련과 이용 그리고 법률제도의 절차적 적용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⁴⁹⁾ 반대로, Inns of Court에서 변호사로서 자격을 부여 받은(called to the Bar) barrister는 Inn에서 주로 의견을 제시(mooting)하거나 토론하는 것 그리고 읽는 것과 보고하는 것을 공부하였다.⁵⁰⁾ 일반인(lay individual)이 아니라 Attorney는 언제 특수한 전문분야의 barrister가 필요한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일반 의뢰인(lay client)아니라 attorney가 barrister의 의뢰인이 되는 경향이 있었다.⁵¹⁾ 짐차로 attorneys는 변론서(written pleadings)를 준비하고 이를 barrister가 법정에서 변론(argue)하는 것이 증가하였다.⁵²⁾ 1629년과 1630년 사이에 더 많은 구별이 정식으로 채택되었다. 예를 들면, barrister는 attorneys와 달리 수임료(fees)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 등이다.⁵³⁾

반면에 Inns of Court는 실무에 종사하는 attorneys에게 barrister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⁵⁴⁾ 판사는 입회를 구하는 attorneys는 Inn

46) 앞의 글.

47) 6 W. HOLDSWORTH, 앞의 글, at 433.

48) 앞의 글, at 434-36. Attorney후보자들은 5년 동안 일반 common solicitor, 법원의 서기(clerk to a court) 또는 법관, barrister등으로 봉사해야 된다.

49) 앞의 글.

50) 앞의 글 at 435, 437.

51) Id. at 439.

52) Id. at 439-40.

53) Id. at 440 n.5

54) 6 W. HOLDSWORTH, 앞의 글, at 442; R. POUND, 앞의 글, at 105.

of Court나 Inn of Chancery의 회원일 것을 요구하였다.⁵⁵⁾ 이런 가정의 결론으로서 attorneys는 이미 쇠퇴(state of decay)하고 있었던 Inns of Chancery에 소속원일 수 있었다.⁵⁶⁾ 결론적으로 18세기 초반에는 attorneys들은 자발적으로 형평법 법원과 보통법 법원에서 활동하는 신사의 모임(Society of Gentlemen Practicers in the Courts of Law and Equity)이라는 직업협회(professional association)를 형성하였다.⁵⁷⁾

또한 17세기에는 새로운 법률 실무개업자들(legal practitioners)이 출현하였다. Pleadings(변호인)는 상세한 규칙에 따라서 구두변론서·탄원서(pleadings)를 마련하던 사람이다.⁵⁸⁾ 부동산양도취급인(conveyancers)은 부동산 양도와 이와 관련된 문서를 마련하는 것을 담당하였다.⁵⁹⁾ 그리고 barristers도 아니고 attorneys도 아니지만 법률관련업무를 수행하던 solicitors가 출현하였다.⁶⁰⁾ 협회를 통해서, pleadings(변호인)와 conveyancers(부동산양도취급인)는 barristers와 근접(approximated)하였고 solicitors는 attorneys와 그룹을 형성하였다.⁶¹⁾ 이 시기에는 barristers의 입회에 대한 규칙에 거의 변화가 없었다. Benchers(평의원)는 Inns에 대한 통제와 barristers(법정변호사)로서 임명(calls to the bench)하는 것에 대한 통제권을 완성하였다. 그러나 Inns의 교육은 끝임 없이 변화하였다. 16세기 후반과 17세기 초반에는 인쇄물거래의 비약적 증가와 학생들과 benchers의 무관심으로 강독(readings)과 토론(moots)에 참가하는 수가 줄어들었고 반면에 도서관에서 혼자 인쇄물을 읽는 현상이 증가하였다.⁶²⁾ 1649년과 1660년의 영연방(Commonwealth)시기 동안에는 법학교육체계(regimen of legal education)가 무너졌었다. 전임강사진(readers)은 강독을 거부하였고 학생, barristers 그리고 심지어 benchers까지도 Inn의

55) 6 W. HOLDSWORTH, 앞의 글, at 443; R. POUND, 앞의 글, at 105.

56) 6 W. HOLDSWORTH, 앞의 글, at 443; R. POUND, 앞의 글, at 105.

57) 6 W. HOLDSWORTH, 앞의 글, at 443

58) 6 W. HOLDSWORTH, 앞의 글 12, at 446.

59) Id. at 447.

60) id. at 448-49.

61) Id. at 432-448.

62) id. at 481-84.

benches가 발부하는 명령을 무시하였다.⁶³⁾ 17세기 후반에는 Inns의 명령, 판사의 결정 그리고 대법관(Lord Chancellor)의 명령을 통해 이전의 법률 교육체계를 회복하려는 노력도 실패하였다.⁶⁴⁾ Inns of Court에서 강독(readings)은 약 1677년경 중단되었다.⁶⁵⁾ 19세기 중반까지 학생들은 스스로의 재주와 노력에 의존하여 법률교육을 받도록 내버려져 있었다.⁶⁶⁾

4. 18세기와 19세기의 법률교육

18세기 동안 attorneys와 solicitors는 의회(legislature)와 개업자협회(Society of Gentlemen Practisers)에 의해 규율되었다. 1729년 의회는 입회하기 위해서는 attorney후보는 적합성과 능력(fitness and capability)에 대한 판사의 심사서(examination)를 제출하여야 하고 문서화된 계약서에 의해 5년 동안 견습생으로 일하여야 한다는 법을 통과시켰다. Society의 초기 기록물에 의하면 부적절한 실무업무를 예방하고 검출하는 것이 이 제도의 긍정적인 목적이라고 기록하고 있다.⁶⁷⁾ 1742년에 Society는 동 법의 집행의 효과를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위원회에서 만든 적정하고 필요한 모든 요구조건은 부정하게 받아들여진 Attorney와 Solicitor를 찾아내고 모든 Society의 회원은 부정적 영업을 인지하고 또한 이를 지양하며, 본 위원회는 미래에 부정적인 영업과 활동을 예방하는 필요한 조치와 방안을 강구하는데 이런 방법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⁶⁸⁾

18세기동안, Society는 다양한 법률전문가의 개혁안을 제안하였다.⁶⁹⁾ 19세기에는 attorneys와 solicitors는 부동산양도업무를 장악(took over

63) Id. at 486-87.

64) Id. at 488-89.

65) Id. at 489.

66) Id. at 493.

67) Id. at 63 n.1, 66.

68) 12 W. HOLDSWORTH, 앞의 글, at 66-67.

69) 예를 들면, Society는 solicitor가 아닌 자가 부동산거래를 하는 것을 용서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Id. at 74.

property conveyancing)하였고⁷⁰⁾ 나중에는 교회법원(ecclesiastical court)과 해사법원(admiralty court)에서 보통법원과 형평법원의 attorney와 solicitor의 업무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던 대소사·대리인(proctor)의 사무도 차치하였다.⁷¹⁾

이들은 유언검인(probate)과 이혼법정, 교회법원(ecclesiastical courts) 그리고 새로 출범한 군법원(new county courts)에 출두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으며 치안판사(justices of the peace)가 될 수도 있었다.⁷²⁾

19세기동안 법률교육을 위한 정식절차가 서서히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1833년 법인화된 Law Society가 수습생으로 임명된 사무원(article clerk)을 상대로 부동산양도, 보통법 그리고 형평법에 대하여 강의를 시작하였으며⁷³⁾ 해마다 강의과목이 증대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Law Society는 매년 입학시험을 주관하였고 이것은 1848년에 법제화되었다.⁷⁴⁾

University College와 London대학은 법률강의를 제공하던 주목받는 학교 중의 하나였다.⁷⁵⁾ 1852년 옥스퍼드 대학은 민사법 학사학위(Bachelor of Civil Law: B.C.L)를 위한 시험을 마련하였고 캠브리지 대학은 1855년에 법학사제도(the Bachelor of Laws: LL.B.)를 도입하였다.⁷⁶⁾ 1906년에는 8개의 대학교가 법학사제도를 가지고 있었다.⁷⁷⁾ 1800년대 초기에는 Inns of Court에서 몇몇 강의가 제공되어졌고⁷⁸⁾ 1847년 Inns(법학원)는 강의제도(lectureships)를 조직화하였으며 1852년 법률교육위원회(Council of Legal Education)이 설립되었다.⁷⁹⁾ 1871년 4개 Inn의 합동위원회는 barrister(법정변호사)가 되기 위한 필수시험제도(compulsory examination

70) See 앞의 글 69.

71) 15 W. HOLDSWORTH, 앞의 글, at 228.

72) 앞의 글.

73) 앞의 글.

74) Id. at 232.

75) Id. at 232-33.

76) Id. at 241.

77) Id.

78) Id. at 233.

79) Id. at 237.

for call to the Bar)를 마련하기로 결정하였다.⁸⁰⁾ 1964년에는 Inns of Courts는 자체 법학전문대학원(School of Law)을 제4 Gray's Inn Place에서 운영하기 시작하였다.⁸¹⁾

5. 1900년대의 법률교육개관

1) Solicitor의 교육

Solicitors에 대한 교육, 실무수행자격에 대한 규제 그리고 업무수행규율은 Law Society에서 수행하고 있다.⁸²⁾ Solicitor의 입회의 통일된 기준은 아래와 같다.⁸³⁾

① Law Society의 학생으로 등록될 것 (등록증명서를 취득함으로써 증명가능)

② 학문적 훈련의 완수: 이 조건은 아래의 4가지 조건들 중 하나로서 증명할 수 있다.

a. 적합한 법학학위를 획득할(securing a qualifying law degree) 예정임 (예를 들면 영국의 대학에서 수여한 법학학위나 또는 국가학문위원회(Council for National Academic Awards)가 인정한 것)

b. 일반전문직업시험:법학학위인정시험 (Common Professional Examination: CPE)⁸⁴⁾의 통과

c. 법학학위수료증을 취득하는 것(gaining a Diploma in Law)

d. Solicitor 1차 시험을 통과하는 것

③ 2차적 훈련의 단계를 완료할 것 (이것은 다음의 조건에 의해 증명할 수 있다).

80) Id. at 239. 동 위원회는 Bar의 학생과 Solicitor학생(solicitors' articled clerks)의 공동교육안을 거부하였다.

81) Malloy, The Inns of Court, 60 N.Y. ST. B.J. 48 (Dec. 1988).

82) H. HANBURY & D. YARDLEY, 앞의 글 2, at 144.

83) COUNCIL OF LAW SOCIETY, TRAINING REGULATIONS regs. 5, 6(1)

84) 본 시험은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학사학위소지자를 대상으로 하는 시험이다.

- a. Society가 인증한 예비코스를 성공적으로 참석하고
- b. 최종시험에 합격하고 영국 내에서 solicitor에게 2년 동안 고용되어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적어도 18개월 이상은 반드시 최종 시험을 합격을 한 상태에서 고용되어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⁸⁵⁾

2) Barrister의 교육

Barristers의 교육, 입회조건 그리고 업무수행규칙들은 법률규정에 의해서 통제되는 것이 아니라 Inns of Court의 Benchers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⁸⁶⁾

17세기에 중단되었던 Inns의 법률교육체계는 법률교육위원회(Council of Legal Education)를 창설하면서 재건되었고 1852년에 강의가 재개되었으며 1853년 첫 번째 시험이 치러졌다.⁸⁷⁾

20세기에는 후보자는 Inn에 의해 법정변호사로 부름(called to the Bar)을 받은 후 학생으로서 다음의 표준과정을 마친 후에 법률실무에 종사할 수 있다.

- ① 조건들을 준수할 것 (학생이 소속한 Inn의 Hall에서 매 8학기동안 3번의 저녁식사를 할 것)
- ② 학업을 완수할 것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함) 이것은
 - i) 적합한 법학학위를 획득할(securing a qualifying law degree) 예정(예를 들면 영국의 대학에서 수여한 법학학위나 또는 국가학문위원회(Council for National Academic Awards)가 인정한 것)이거나
 - ii) 법학교육위원회(Council of Legal Education)에게 학위이수예정 또는 4개의 Inn중 어느 한 곳에서 학생(mature student)으로 입학허가를 받은 것으로 증명할 수 있다.⁸⁸⁾

85) d. regs. 5, 29-30, 39-40, 51.

86) H. HANBURY & D. YARDLEY, 앞의 글, at 146.

87) COUNCIL OF LEGAL EDUC., INNS OF COURT SCHOOL OF LAW 1988-89 CALENDAR 60 (student booklet).

88) 보통직업시험(Common Professional Examination: CPE)을 통과하거나 1989년 10월 1일 이전에 법학교육위원가 제시한 조건들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다.

③ 변호사시험(Bar Examination)을 통과함으로써 실무연수단계의 교육을 완수하고

④ 적어도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Barrister 밑에서 6개월은 비실무자격(non-practicing capacity)상태에서 다른 6개월은 실무자격상태(practicing capacity)에서 12개월의 수습(pulprillage)기간을 마쳐야 한다.

III. 1990년 이전의 사법개혁의 움직임⁸⁹⁾

법은 살아 움직인다.⁹⁰⁾ 이런 명제가 증명하듯이 영국에서도 끊임없이 법은 변화하였고 법률전문가집단도 여기에 맞추어 변화하고 있다.⁹¹⁾ 본 장에서는 19세기동안의 법률전문가 개혁의 주요한 움직임과 1990년 이전의 상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19세기때 등장한 개혁안들

1846년, E. W. Field라는 법률제도연구자가 barristers와 solicitors의 통합을 제안하였는데 이 안은 미국의 경우처럼 모든 변호사(lawyers)가 법정에서 변론할 수 있도록 하는 개혁안이었다.⁹²⁾ 본 개혁안에 대한 찬성적 의견들로는 ① solicitors가 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변호사(lawyers)가 법정에서 변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⁹³⁾, ② 법률서비스를 공급하는 자(the “distributor” of the law)가 직접적인 소비자의

89) See R. ANDREW, REVIEW OF GOVERNMENT LEGAL SERVICES (1989). 전체적인 내용은 MJ Quinn, REFORM OF THE LEGAL PROFESSION IN ENGLAND AND WALES, 12 N.Y.L. Sch. J. Int'l & Comp. L. 150면 이하 참조.

90) E. JENKS, THE BOOK OF ENGLISH LAW 353 (6th ed. 1967).

91) See, e.g., id. at 353-55.

92) 15 W. HOLDSWORTH, supra note 12, at 242.

93) 15 W. HOLDSWORTH, supra note 12, at 242.

통제 하에 있어야 바람직하다는 의견, ③ 변호사가 우월한 인맥과 관계가 아니라 뛰어난 능력으로 법관이 될 수 있다는 의견 ④ solicitor가 개선된 직업환경과 미래를 가짐으로써 일반 대중들이 solicitor의 고취된 직업적 소명과 에너지에서부터 더 많은 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의견⁹⁴⁾ 또한 ⑤ 법학을 공부한 자가 몇 년 동안 실무에 종사한 후에야 본인이 어떤 분야(barrister 또는 solicitor)에 더 적합한지 알 수 있다는 의견⁹⁵⁾ 등이 있다.

약 50년 뒤에 William Holdsworth⁹⁶⁾는 Field의 개혁안에 대해서 이전에 체제를 옹호하는 의견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① barrister와 solicitor의 분리는 복잡한 법체계에서 자연적으로 출현한 것이고, ② barrister는 의뢰인(client)에 대해서 편견이 없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③ barrister가 solicitor에 비해 세속적 관계에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barrister는 사건의 법률적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고 ④ barrister의 독립성은 법원이 자율을 보장하였다기 보다는 barrister가 Inns을 통해서 스스로 통제하였기 때문이며 ⑤ barristers의 독립성과 barristers로부터 법관을 선발하는 것은 영국법원의 특징인 용기와 공평을 증진시키고 법의 지배(rule of law)와 자유로운 토론을 지켜주는 중요한 요소이라고 하였다.⁹⁶⁾

1854년 왕립위원회(Royal Commission)가 발표한 제안들 중에는 4개의 Inns of Court가 함께 대학을 만들고 여기 출신의 barristers에게 법학석사학위(master of law)를 수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⁹⁷⁾

1867년 Roundell Plamer가 법학교육협회(Legal Education Association)를 설립하였고 이 단체는 두 법률전문가집단(barristers와 solicitors)을 함께 교육시킬 수 있는 일반법학전문연수원(General School of Law)을 설립할 것을 제안하였다.⁹⁸⁾ 본 개혁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두 법률전문가

94) Id. at 242-43 (quoting Bagehot, Good Lawyers or Bad, in 3 LITERARY STUDIES 276, 278-79 (Silver Library ed. 1870)).

95) Id. at 243 (quoting Lord Hannen, at an 1868 meeting of the Solicitors' Benevolent Association, in CHRISTIAN, A HISTORY OF SOLICITORS 210-11).

96) Id. at 243-44.

97) Id. at 238, 244-45.

집단에는 각자의 독자적이고 구별되는 교육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1874년 대법관(Lord Chancellor)로서 Palmer는 General School of Law를 설립하려는 법안들을 제출하였지만 모든 시도는 실패하였다.⁹⁹⁾

2. Benson의 보고서

1970년대에는 사법개혁에 대한 조사는 소송비용의 과다, 소송지연 그리고 사법제도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일반인의 불만들을 신문기사가 다루면서 시작되었다.¹⁰⁰⁾ 일반인의 사법제도에 대한 불만족의 영향으로, 1976년 2월 12일 Wilson수상이 법률서비스에 대한 왕립위원회(Royal Commission on Legal Services)를 설립한다고 발표하였다.¹⁰¹⁾

이에 따라 설립된 왕립위원회는 잉글랜드, 웨일즈 그리고 북아일랜드에서 법률서비스와 관련된 법조항에 대해서 조사하면서 법조전문가양성, 법조인규제, 법조인훈련, 사법구조와 법조인단체의 구성에 대한 개혁이 일반대중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지 조사한다고 밝혔고 본 조사에는 수입료를 결정하는 합의(arrangements for determining its remuneration)와 barristers나 solicitors가 아닌 사람은 부동산이전에 따른 법률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한 규칙에 대한 조사도 포함되었다.¹⁰²⁾ 조사를 시작한지 3년 반이 지난 후, 당해 위원회는 일명 Benson보고서라는 법률서비스에 대한 왕립위원회의 보고서를 발표하였다.¹⁰³⁾ 통상의 신문독자들이라면 법률전

98) Id. at 245.

99) Id. at 245-46.

100) P. REEVES, ARE TWO LEGAL PROFESSIONS NECESSARY? 10 (1986).

101) Wickenden, Royal Commission on Legal Services: Pause for Reflection—I, 123 SOLIC. J. 241, 241 (1979).

102) Wickenden, Royal Commission on Legal Services: Pause for Reflection—II, 123 SOLIC. J. 260, 260 (1979) (quoting the terms of reference of the Royal Commission).

103) BENSON REPORT, supra note 111. In completing the Report, the Commission utilized for the report some 800 invited submissions “and evidence from some 2,000 members of the public about their experiences with lawyers.” Wickenden, 앞의 글, at

문가를 위한 눈가림(‘whitewashing’ of the legal profession)이었다는 것을 눈치 챘을 것이다.¹⁰⁴⁾ 당해 위원회가 초기에 조사하고자 하는 사항들은 ① 변호사(lawyer: barristers와 solicitors)가 되는 방법¹⁰⁵⁾ ② 변호사의 교육¹⁰⁶⁾ ③ barristers와 solicitor의 수입과 사회적 지위 ④ solicitor의 토지이전업무에 대한 독점문제¹⁰⁷⁾들이었다. 그런데 발표된 Benson의 보고서는 부동산거래에 대해 solicitors의 독점을 유지하고 barristers에게는 법정에서 변론할 수 있는 독점권을 유지시키고, 법학교육체계를 각 지역의 독자적인 발전에 맡기고 barristers와 solicitors의 구별을 현상태(status quo)로 유지하는 것이었다.¹⁰⁸⁾

당 보고서는 명확한 표현을 사용하여 보수적인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위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R17.1 법률전문가는 반드시 barristers와 solicitors의 두 분야(two branches)로 계속해서 구별되어 조직되어야 한다.¹⁰⁹⁾

R18.5 solicitors에 대해 법정변론권을 일반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없어야 한다.¹¹⁰⁾

R30.1 soliciotors와 기타 다른 전문가집단의 회원간의 제휴(partnerships)는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¹¹¹⁾

241.

104) Implementing Benson, 129 NEW L.J. 113, 113 (1979).

105) Zander, State of Knowledge About the Legal Profession—IX: Unmet Need for Legal Services (Continued), 126 NEW L.J. 999,999 (1976).

106) Zander, State of Knowledge About the Legal Profession—X: Legal Education, 126 NEW L.J. 1023, 1023 (1976).

107) Zander, State of Knowledge About the Legal Profession—XI: What Research Should Be Done Now?, 126 NEW L.J. 1047, 1047 (1976).

108) The Royal Commission—Change and Consolidation, 129 NEW L.J. 961, 961 (1979).

109) 원문은 다음과 같다. “The legal profession should continue to be organised in two branches, barristers and solicitors.”

110) 원문은 다음과 같다. “There should be no general extension of the rights of audience of solicitors.”

111) 원문은 다음과 같다. “Partnerships between solicitors and members of other professions should not be permitted.”

R33.14 Barristers는 동업자(partnership)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¹¹²⁾¹¹³⁾

당위원회가 제안한 것 중 나중에 반대의 결과가 된 것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공증인(notaries public)은 더 이상 보상을 받고는 부동산거래를 할 수 없다는 것¹¹⁴⁾과 다른 하나는 barrister에게 사무보조인(clerk)을 고용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¹¹⁵⁾이었다.

Benson보고서에 대한 반응은 매우 다양하였다. 예를 들면, 당 보고서는 법률전문가, 의뢰인 그리고 일반대중에 대해서 영속적인 중요성을 가지는 것으로 묘사되기도 하였지만¹¹⁶⁾ 당위원회가 solicitor에게 법정변론권을 확대하지 않은 것은 논리적이지 않은 이유들과 설득력이 약한 전제위에서 마련되었다는 비판이 제기 되었다.¹¹⁷⁾ 그 당시 법무부장관 (Attorney-General)인 Michael Havers경은 본 보고서는 법률서비스의 미래를 위해 마련되었고 본 보고서는 앞으로 더 많은 논의를 전개할 수 있도록 충분히 포괄적인 사항을 담고 있다고 하면서 본 보고서를 수용하였다.¹¹⁸⁾

결론적으로 Benson 보고서는 영국 법률전문가제도의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개혁을 촉진시키지 않았고 사실 본 보고서가 밝히듯이 그런 의도도 없었다. 그런데, 당 보고서는 향후에 법률전문가제도의 개선을 위한 기초를 제공하였고 정책적 결정(policy doctrine)¹¹⁹⁾으로서 작용하였다.

3. 민사정의심의위원회(Civil Justice Review Committee)

112) 원문은 다음과 같다. “Barristers should not be permitted to practise in partnership.”

113) Royal Commission on Legal Services: Principal Recommendations, 129 NEW L.J. 964, 965-66, 983 (1979) [hereinafter Principal Recommendations].

114) Principal Recommendations, supra note 130, at 966.

115) Id. at 983.

116) Implementing Benson, supra note 125, at 113.

117) Berlins, Rights of Audience, 129 NEW L.J. 871, 871 (1979).

118) RCLS: Adjournment Debate, 129 NEW L.J. 1123, 1123 (1979).

119) Twining, 앞의 글, at 558, 559.

Lord Chancellor인 Hailsham은 1985년 2월 브리티쉬홈스토어(British Home Stores)의 회장인 Maurice Hodgson경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사정의심의위원회(Civil Justice Review Committee)를 설립하였다.¹²⁰⁾ 본 위원회는 주로 비법률가로 구성되었으며 민사절차의 개혁안을 마련하였다.¹²¹⁾

본 위원회는 민사법영역에서는 부가적인 법관양성을 건의하였고 barrister의 부당한 업무수행을 담당할 barrister 조직 내에 자율규제절차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¹²²⁾

4. Marre 위원회 보고서 (The Marre Committee Report)

1988년 7월 법률전문가미래위원회 (the Committee on the Future of the Legal Profession)는 당위원회의 보고서인 “변화의 시점”(A Time for Change 또는 the Marre Committee Report)을 발간하였다.¹²³⁾ 당위원회의 위원은 Bar Council과 Law Society가 공동으로 1986년 4월에 임명하였고 당 위원회는 ① 일반대중의 필요와 요구를 만족할 수 있는 법률전문서비스의 제공문제 ② 궁극적으로 이익을 가져올 법률교육의 변화가능 영역조사 ③ 향후 법률서비스분야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등의 조사를 목적으로 구성되었다.¹²⁴⁾ Marre위원회는 법률전문가영역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서비스에서 문제되는 현실을 언급함으로써 Benson 왕립위원회(Benson Royal Commission)와 차별을 두었다.¹²⁵⁾

120) NAT'L CONSUMER COUNCIL, ORDINARY JUSTICE: LEGAL SERVICES AND THE COURTS IN ENGLAND AND WALES: A CONSUMER VIEW 266 (1989) [hereinafter ORDINARY JUSTICE].

121) CIVIL JUSTICE REVIEW, REPORT OF THE REVIEW BODY ON CIVIL JUSTICE, 1988, CMND. 394.

122) ORDINARY JUSTICE, 앞의 글, at 266.

123) MARRE REPORT, 앞의 글.

124) Id. § 2.2 (quoting the Committee's terms of reference).

125) Id. § 3.4.

Barristers와 solicitors의 융합문제를 면밀히 관찰하기 보다는 당 위원회는 현존하는 두 개로 분화된 법률전문가구조하에서 법률적 업무의 수행과 절차에 대해 초점을 맞추었다.

결국, 당 위원회가 집중한 것은 국왕법정(Crown Court)에서 solicitors가 변론할 수 있도록 solicitor의 권리를 확대하는 것이었다.¹²⁶⁾ Marre위원회의 다수의견은 의뢰인(clients)은 반드시 변호사를 선택한 최대한의 권한을 가져야 하고 법정에서 변론할 수 있는 권리는 변호사(lawyer)의 능력, 경력 그리고 훈련과정을 통해서 solicitor에게도 부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¹²⁷⁾ 다시 말하면, solicitor가 Crown Court에서 모든 사건에서 자유롭게 변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공공의 이익(public interest)이 된다는 것이다.¹²⁸⁾ 위원회의 1/3은 이 의견에 반대하였는데 반대한 6명중 5명은 barristers였으며¹²⁹⁾ 근거는 barrister의 특별한 변론기술(the specialist advocacy skills of barristers)이 필요하며¹³⁰⁾ 대부분의 근거는 Benson보고서를 반복하는 것으로서 결국 Solicitors에게 법정변론권을 확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¹³¹⁾ 결국, Marre보고서는 민사사건에서 상급법원(higher court)에서 solicitors의 변론권을 계속 제한하는 것을 지지하면서 모든 법원에서 변론권은 변경되지 않고 예전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¹³²⁾

Marre위원회는 법률보조시스템에 대한 우려와 신설된 법률구조위원회(Legal Aid Board)의 신뢰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¹³³⁾ 부동산양도업무(Conveyancing)는 solicitors에게 맡겨두는 것이 금융기관(financial

126) 변론권에 대한 당 위원회의 다수의견은 다음 부분을 참조 chapter 18. MARRE REPORT, 앞의 글, §§ 18.1-.39,-.41 (summary). 소수의견을 표명하는 의원의 논거와 주장은 다음 부분 참조 part VI of the Report. Id. at 197-211.

127) Id. §§ 18.27-.28.

128) Id. § 18.33.

129) Marre Committee Approves Extended Audience Rights in Crown Court for Solicitors, LAW SOC'Y GAZETTE, July 13, 1988, at 2.

130) MARRE REPORT, supra note 4, §§ 2.1-.3 (Note of Dissent).

131) Id. § 3.1 (Note of Dissent).

132) Id. § 20.17(1).

133) MARRE REPORT, supra note 4, §§ 8.1-.140.

institutions)의 통제에 놓는 것보다 바람직하다고 결론을 내렸다.¹³⁴⁾ Marre보고서에서는 법학교육과 훈련에 대해 다루고 있지만 당 위원회의 결론은 현존하는 Law Society와 Bar의 교육과 훈련방식을 강화하고 기존에 계획된 변화를 수행하며 법학도(law students)에게 경제적 혜택과 장학금을 증대시킬 것을 제안하였다.¹³⁵⁾

IV. 1989년 대법관의 그린보고서(녹서)¹³⁶⁾

(THE LORD CHANCELLOR'S 1989 GREEN PAPER PROPOSALS)

1987년 10월 26일 Benson 보고서에 만족을 표명했던 Lord Havers는 취임후 4개월만에 Lord Chancellor직에서 사임하였다. Lord Havers의 사임은 이전부터 계속된 법조개혁의 부담과 이로 인한 본인의 건강상의 이유라고 하였다. 이에 Margaret Thatcher수상은 James Mackay를 새로운 Lord Chancellor로 임명하였다.¹³⁷⁾

Lord Mackay도 이미 잘 알고 있듯이, 그의 직책은 행정적, 사법적, 그리고 입법적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었다.¹³⁸⁾ 영국에서 Lord Chancellor라는 직함은 헌법적으로는 의문점(constitutional curiosity)이 있는 직이다. 많은 사람들은 한 사람이 귀족원의 대표자(Speaker of the House of

134) Id. § 11.47.

135) Id. §§ 13.1-.35 (academic stage), 14.1-.24 (practical training), 14.1-.62 (vocational stage), 16.1-.22 (continuing education and specialization), & 17.1-.16 (future of legal education).

136) Green Paper(녹서)는 영국 정부의 의회 심의용 정책 제안서이다. 백서에 대비되는 개념으로도 사용.

137) Fraser, MacKay Named Lord Chancellor, CLS Q., Spring 1988, at 26.

138) Lord Chancellor는 내각을 구성하는 장관 중 한명이다. 또한 Speaker of the House of Lords로서 귀족원(상원)에서 법률통과에 주요한 역할을 하며 사법부를 구성하는 최고재판관으로서 사건심리를 주재한다. Lord Chancellor는 수상의 추천에 의하여 여왕이 임명한다. THE LAWBOOK, 앞의 글, at 2.

Lords)이면서 동시에 사법부의 수장이면서 동시에 내각의 일원(a member of the Cabinet)인 Lord Chancellor에 대해 우려했다. 무엇보다도 정부가 Lord Chancellor가 가지는 2가지 다른 역할을 이용하여 귀족원(House of Lords) 또는 법관에 대해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염려가 있다.

이에 대하여 Mackay경은 내각의 일원으로서 행사하는 행정적 권한은 수상 또는 선서민의 의지에 따라서 제외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의해서 견제되고 있으며 또한 귀족원의 일원에서 제외됨으로서 견제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그는 그의 재임기간동안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사법시스템을 의회와 대중에게 소개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하였다. 그런데 그의 직책이 가지는 복잡한 역할 때문에 자신이 제안하는 사법개혁안에 대하여 Lord Chancellor로서 반대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았다.¹³⁹⁾

전임자와 달리 Mackay경은 개혁에 대해 열정을 가지고 있었기에 영국 정부가 영국의 사법제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Mackay경이 가장 적합한 인물이었다. Mackay경의 당해 직을 수행한 첫째 주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Lord Chancellor로서 solicitors로부터도 고등법원의 판사가 임용되어야 한다는 예를 들면서 변화와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였다.¹⁴⁰⁾

Mackay경이 취임한지 1년 정도가 지난 후, 그는 올해는 법률개혁안을 발간할 수 있다고 하였고 당해 보고서는 ①두 종류의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사법구조 ②법률가교육 ③법률가양성 ④기준 ⑤다양한 분야의 협력관계 ⑥비법률가에 의한 부동산양도 ⑦승소사례금(contingency fee)의 가능성 등을 다루고자 하였다.¹⁴¹⁾ 당 보고서는 촉박한 시간관계상 일반대중과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구하는 협의서형식이 될 수도 있었다. 어떤 사람

139) Concerning opposition to the proposed Lord Chancellor's Advisory Committee, see *infra* text accompanying notes 246, 261, 266-67, 275-76, & 279-80.

140) NDV, The Lord Chancellor Introduces Himself, 131 SOLIC. J. 1504, 1504 (1987).

141) Mackay Springs Green Paper Surprise, LAW SOC'Y GAZETTE, Oct. 26, 1988, at 2.

들은 최종 평가서가 변호사의 업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공공의 이익에 봉사할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방향이 될 것으로 기대하기도 하였다.¹⁴²⁾

1. 그린 보고서(The Green Papers)¹⁴³⁾

1989년 1월 25일 Lord Chancellor인 Mackay경이 영국에서의 법률전문가의 개혁을 위한 3개의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그 3개의 보고서는 법률전문가의 업무와 조직(The Work and Organization of the Legal Profession)¹⁴⁴⁾, 승소사례금(Contingency Fees)¹⁴⁵⁾, 그리고 인가받은 실무가에 의한 부동산양도(Conveyancing by Authorized Practitioners)¹⁴⁶⁾에 관한 것으로서 3개의 보고서를 통상 그린보고서(Green Papers)라고 한다.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법학교육

법학교육은 3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는 학문과정(academic: 일반적으로는 법학학위과정을 마치는 것), 두 번째는 실무교육과정(vocational) 그리고 마지막은 실무수습과정(practical)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실무교육과정과 실무수습과정은 barrister와 solicitor가 분리되어 있다.¹⁴⁷⁾ 학문과정의 필수과목은 헌법, 행정법, 계약법, 불법행위법(tort), 부동산법, 신탁법, 그리고 형법이며 증거법(evidence)이 추가되기도 한다.¹⁴⁸⁾ Benson과

142) See, e.g., Comment, End the Squabbles, 133 SOLIC. J. 3, 3 (1989).

143) M. ZANDER, THE LAW-MAKING PROCESS 6-7 (3d ed. 1989).

144) LORD CHANCELLOR'S DEP'T, THE WORK AND ORGANISATION OF THE LEGAL PROFESSION, 1989, CMND. 570 [hereinafter GREEN PAPER ON THE LEGAL PROFESSION].

145) LORD CHANCELLOR'S DEP'T, CONTINGENCY FEES, 1989, CMND. 571 [hereinafter GREEN PAPER ON CONTINGENCY FEES].

146) LORD CHANCELLOR'S DEP'T, CONVEYANCING BY AUTHORISED PRACTITIONERS, 1989, CMND. 572 [hereinafter GREEN PAPER ON CONVEYANCING].

147) GREEN PAPER ON THE LEGAL PROFESSION, 앞의 글, § 3.3.

148) Id. §§ 2-3.

Marre보고서에 있던 두 법률전문가의 양성을 위한 직무교육과정의 통일 시스템의 필요성논쟁을 보더라도 직무연수를 위한 필수핵심과정에 있어서 필수과목에 우선권을 부여되어야 한다.¹⁴⁹⁾ 실무연수와 변론기술을 위한 계속적 직무연수를 포함한 법학교육의 변화는 법정변호사협회장(General Counsel of the Bar)과 사무변호사협회장(Council of the Law Society) 그리고 다른 전문가들과도 제한된 협의를 하지만 결국 Lord Chancellor의 법학교육과 법률실무에 대한 자문의위원회(Advisory Committee on Legal Education and Conduct)가 결정해야 한다. 당해 자문의위원회는 General Counsel of the Bar, the Council of the Law Society 그리고 다른 전문가들의 제한적인 자문을 통해서 Lord Chancellor가 임명하는데 판사가 위원장이 되며, 2명의 barristers, 2명의 solicitors, 2명의 법학자대표(academic representatives) 그리고 8명의 일반인대표(lay representatives)로 구성되며 Lord chancellor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¹⁵⁰⁾

2) 전문성기준과 업무기준(Professional Standards and Conduct)

Lord Chancellor는 그의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통하여 2개의 전문성기준에 대한 규칙(codes of professional standards)을 마련할 수 있다. 하나는 법률조언과 조력에 대한 규정이고 다른 하나는 법정에서 사건의 절차와 변론에 대한 규정으로서 직접적으로 barristers 또는 다른 advocates를 대상으로 하는 규정이다.¹⁵¹⁾ 법률전문가에 대한 불만을 다루기 위해서, Solicitor협회에서 있던 불만족처리사무국(Solicitors Complaints Bureau)은 폐지되고 법률서비스옴부즈만(Legal Services Ombudsman)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당 법률서비스옴부즈만은 Lord Chancellor가 임명하고 당 옴부즈만은 solicitors 및 barristers 그리고 장래에 형성될 수 있는 법률전문가

149) Id. §§ 4-5.

150) Id. § 3.14.

151) Id. §§ 4.11-15.

가 관련된 서비스불만족 사례 모두를 관할한다.¹⁵²⁾

3) 변론(Advocacy)

법정에서 변론할 수 있는 권리는 barrister 또는 solicitor라는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자격을 가지고 있음을 자격증명서 통해 증명함으로써 획득하게 해야 한다.¹⁵³⁾ Lord Chancellor는 그의 자문위원회의 자문과 사법부의 자문을 통해서 각급 법원에서 변론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¹⁵⁴⁾

완전한 변론자격증(full advocate's certificate)은 본 자격증 소유자에게는 모든 법원에서 변론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데 그 자격증은 적합한 학문교육, 직무교육 그리고 실무연수코스를 마친 검증된 후보자 또는 제한적 변론자격증을 부여 받고 일정 기간이상 동안 실무에 종사한 자에게 부여된다.¹⁵⁵⁾ 제한적 변론자격증(limited certificate)은 3가지 형태가 있다. 형사법분야, 민사법분야, 그리고 일반적 민·형사사건(general)인데, 제한적 변론자격을 가진 변호사는 Coroners' Court, Magistrates' Court의 모든 재판, Crown Court에서 배심원재판을 제외한 모든 재판, County Court에서 모든 재판, 그리고 and High Court의 정식재판과 각재판부의 재판에서 변론할 수 있다.¹⁵⁶⁾ 과도기동안은 모든 실무에 종사하는 solicitors는 제한된 변론자격을 부여받을 것이고 실무수습과정(pupillage)을 마친 barristers는 새로운 규칙이 적용될 때 완전한 변론자격을 부여받을 것이다.¹⁵⁷⁾

법정에서 그들의 사건을 변론하면서 발생한 과실책임에 대한 면책(Immunity from actions)은 모든 변론수행자(advocates)에게 적용되어야 한다.¹⁵⁸⁾ 변론수행자와 비변론수행자(이전의 법제도하에서는 barrister와

152) Id. § 4.31.

153) Id. §§ 5.8, .14.

154) Id. § 5.16.

155) Id. § 5.15.

156) Id. §§ 5.24, .26.

157) Id. §§ 5.36-.37.

solicitor)의 절차상의 참여여부는 규칙에 의해 정해지기보다는 의뢰인이 정해야 한다.¹⁵⁹⁾

4) 직접적 접촉 (Direct Access)

현재까지는 barrister는 solicitor로부터 사건설명(instructions)을 들었고 때로는 특허상표대리인(patent and trademark agents), 런던의 공증인(London notaries), 공인 부동산중개자 또는 다른 전문 직업군으로부터도 사건을 의뢰받았다.¹⁶⁰⁾ 또한 외국관련사건에서는 영국외부의 일(non-United Kingdom work)에 대해서는 직접 사건설명을 듣고 의뢰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영국이외에서의 소송 또는 조정의 경우는 영국의 일반소송의뢰인으로부터 사건설명을 듣고 고용될 수 있으며, 외국인인 일반소송의뢰인으로부터 영국이외의 사건에 대해 사건설명을 듣고 고용될 수 있었다.¹⁶¹⁾ 그린보고서(Green Papers)는 1992년 이후 유럽통합에 따른 유럽공동체의 경쟁체제라는 관점에서 직접적인 접촉에 대한 제안을 지지하였다.¹⁶²⁾

5) 왕실고문변호사단 (Queen's Counsel: QC)¹⁶³⁾

2단계의 변론변호사체계(two-tiered system of advocates)는 하위 변론변호사의 이익을 위해서 유지될 것이다.¹⁶⁴⁾ barristers이외에도 solicitors도 변론변호사로서 Queen's Counsel에 임명될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변론실무를 수행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명예직으로서 QC임명은 계속될 것이다.¹⁶⁵⁾

158) Id. § 6.2.

159) Id. § 7.4.

160) Id. § 8.4 (referring to the Bar's Code of Conduct).

161) Id. (referring to the Overseas Practice Rules of the Bar).

162) Id. §§ 1.11, 8.8-9.

163) "QCs" or "Silks": "King's Counsel" when a king is the ruling monarch of the United Kingdom. THE LAWBOOK, 앞의 글, at 3. The Queen's Counsel는 Lord Chancellor가 추천하는 고참,(senior) barristers로서 모든 사건에서 변론할 수 있다. 대체로 QC는 중요한 사건의 변론을 맡았다. J. OWENS, THE LAW COURTS 84 (1976).

164) GREEN PAPER ON THE LEGAL PROFESSION, supra note 177, § 9.5(b).

6) 사법부(The Judiciary)¹⁶⁶⁾

사법부의 구성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다.

판사보(Masters)와 행정책임자(Registrars): 적어도 7년 이상 제한적 민사사건 변론자격을 보유한자는 누구라도 고등법원판사보(High Court Master) 또는 행정책임자(Registrar) 또는 군법원의 행정책임자(County Court Registrar)로 임명될 수 있다.¹⁶⁷⁾

순회법원 판사(Circuit Judges)와 상급법원판사(Supreme Court¹⁶⁸⁾): Master와 Registrar와 동격의 법원공무원은 적어도 2년 이상 그 직을 수행한 경우 순회법원 판사에 임용될 수 있다. 또한 완전한 일반 변론자격증(full general advocacy certificate)을 10년 이상 소유하거나 완전한 형사 변론자격증과 제한된 민사자격증을 소유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도 10년 이상 자격을 소유한 자는 고등법원 판사에 임용될 수 있다. 상급법원 판사로 임용되는 데는 2가지 루트가 있다. 2년 이상을 순회법원 판사로 재직하거나, 완전한 일반 변론자격(full general advocacy certificate)을 적어도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가능하다.¹⁶⁹⁾

165) Id. § 9.6.

166) 판사로 임명되는 solicitor의 수를 증대시키려는 Lord Mackay의 의지는 그린보고서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See, e.g., Seeking Solicitors for Judicial Office, LAW SOC'Y GAZETTE, Jan. 5, 1989, at 5; Thompson, Lord Mackay Talks to the Gazette, LAW SOC'Y GAZETTE, Feb. 24, 1988, at 10-11; Lord Chancellor Reaffirms Need for More Solicitor Judges, 85 LAW SOC'Y GAZETTE, Feb. 17, 1988, at 2. For clarification of the levels in British courts, see supra note 4.

167) GREEN PAPER ON THE LEGAL PROFESSION, 앞의 글, § 10.10. County Register는 County Court의 행정책임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Registrar는 고등법원(High Court)의 Masters adjudicate처럼 소규모 사건(smaller claims), 조세사건(taxation of costs), 중간심리(interlocutory summonses) 그리고 신청서검토에서 판사와 같은 역할을 한다. Address by C.B. Harrison, The Barristers' Clerk and the Courts System (Oct. 6, 1976), in BCA ANSWERS, supra note 5, answer to question 4.

168) 종전에는 Supreme Court는 항소법원, 고등법원, 형사법원을 지칭하는 것이었다. 현재는 대법원이 생기면서 이들 법원을 Senior Courts of England and Wales라고 부른다.

169) Id. § 10.8(i).

귀족원(House of Lords): 귀족원상임법관(Lord of Appeal in Ordinary)¹⁷⁰⁾으로 임명될 후보자는 반드시 완전한 변론권을 적어도 15년 동안 보유하거나 영국과 북아일랜드에서 상급법원(superior court)의 판사이거나 Lord Chancellor(대법관 또는 귀족원수석법관)의 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¹⁷¹⁾

7) Barrister의 실무업무

그린보고서는 Barrister협회가 실무연수를 공정하게 분배할 것을 담보하고 당 협회의 사무실과 업무(tenancies in chambers)에 대한 공정한 접근이 보장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¹⁷²⁾ barrister의 회의사무공간(chamber)을 Inns of Court밖에 두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제안하였고¹⁷³⁾ barrister들의 업무제휴(partnerships)와 회사법인화(incorporation)를 장려하고 있으며 barrister가 다른 barrister를 포함하여 업무보조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¹⁷⁴⁾ 또한 barrister가 협회회의 사무실(chamber)에 대한 행정사무를 담당하거나 업무협상을 담당한 사무보조인(clerk)의 사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하고 다른 대체 시스템에 의해서 그들 업무를 관리하고 그 자신의 업무에 대한 수입료를 협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¹⁷⁵⁾

8) 다양한 분야와 다양한 국가에서 실무수행

(Multi-Disciplinary and Multi-National Practices)

다양한 분야에서 업무와 다국가적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제한규정이 있었던 1974년 Solicitors Act, Law Society의 실무규칙(Law Society's

170) 일명 Law lord로 불리며 7인 이상 11인 이내로 구성되었다.

171) Id. § 10.3. "The Scottish position will be considered separately." Id.

172) Id. §§ 11.5, .7.

173) Id. § 11.12.

174) Id. § 11.19.

175) Id. § 11.24.

Practice Rules) 그리고 barristers협회의 업무수행규칙(Bar's Code of Conduct)에서 복합 업무수행을 제한하는 규정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고 하였다.¹⁷⁶⁾

9) 광고(Advertising)

광고기준국에서 마련한 광고실무에 관한 영국규정(British Code of Advertising Practice)은 법률전문가에 대한 광고기준을 마련하고 있었다. 법률전문가에 대한 광고는 적법하고, 품위가 있고(decent), 정직하고(honest)) 현실그대로(truthful)이어야 한다.¹⁷⁷⁾ 즉, 광고의 기준과 한도는 당 규정에 의해야 한다고 하였다.

10) 유언검인(Probate)

그린보고서에서는 유언검인에 대해 두 가지 접근법이 있었다. 하나는 barrister 및 solicitors 그리고 공증인에 더하여 신탁회사(trust corporations) 공인된 부동산양도업자(licensed conveyancers), 인가받은 실무가(authorized practitioners) 그리고 특허 받고 승인된 회계사(chartered and certified accountants)와 같은 특수전문계층들은 반드시 유언을 승인하는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유언관리장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¹⁷⁸⁾ 또는 아무런 제한 없이 누구라도 위의 자격이 부여되어야 하며 지원서에 대한 선서의무는 더 이상 요구되지 않아야 한다.¹⁷⁹⁾

11) 승소사례금(Contingency Fees)

변호사는 승소하는 경우 승소금액에서 일정부분을 받을 수 있고 패소한 경우는 비용을 받지 않는 승소사례금(contingency fee)의 도입은 좀

176) Id. §§ 12.8, .13-.14, .18-.19, .22.

177) Id. § 13.3.

178) Id. §§ 14.11-.17.

179) Id. § 14.18.

더 고려를 해야 한다.¹⁸⁰⁾

12) 부동산양도절차(Conveyancing)

변호사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들을 만족한다면 일정한 개업실무자들은 부동산양도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일정한 조건들에는 공인된 권한행사단체(recognized authorization), 별도의 고객용 은행구좌의 유지, 법률이 요구하는 업무규정의 준수, 경제적 손실로 인한 소송을 감당할 재정능력, 불평을 감당할 능력의 증명, 적절한 옴브즈만제도의 회원 등이다.¹⁸¹⁾ 공인된 개업자들은 1987년 은행법상의 영국 은행(Bank of England), 1986년 건설협회법상에 건설협회(Building Societies Commission), 또는 필수적 요구사항을 적용하고 수행할 수 있는 Lord Chancellor를 만족시킬 수 있는 단체에 의해서 규제되어야 한다.¹⁸²⁾

V. 그린보고서(녹서)¹⁸³⁾에 대한 반응¹⁸⁴⁾

Mackay경의 개혁안에 대한 반응은 열렬한 환영에서부터 극단적인 분개까지 다양하였다.

1. Barrister협회(General Council of the Bar¹⁸⁵⁾)

180) GREEN PAPER ON CONTINGENCY FEES, 앞의 글, §§ 1.1, .8, 5.3-.4.

181) GREEN PAPER ON CONVEYANCING, 앞의 글, §§ 3.5-.13.

182) Id. §§ 3.15-.16, .18.

183) Green Paper(그린보고서: 녹서)는 영국 정부의 의회 심의용 정책 제안서.

184) 전체적인 내용은 MJ Quinn, REFORM OF THE LEGAL PROFESSION IN ENGLAND AND WALES, 12 N.Y.L. Sch. J. Int'l & Comp. L. 266면 이하 참조.

185) General Council of the Bar는 1894년에 설립된 barrister의 협회이다. 당협회는 barrister의 권익과 내부규율을 담당하고 있다.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barrister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당 협회는 법률교육에서 필수과목의 확장을 거부하였다. 확대될 필수과목에는 유럽공동체 법과 외국어 그리고 변증방법이외의 특수 분야에 대한 부가적 훈련을 포함하고 있다.¹⁸⁶⁾

당 협회(The Bar)는 Lord Chancellor의 당시 자문위원회를 실패라고 낙인찍었다.¹⁸⁷⁾ 대안으로 당 협회는 법률교육위원회(Legal Education Committee)의 설립을 추천하였다. 동 위원회는 모든 직업위원회의 심사로부터 분리되어야 하며 Lord Chancellor가 아니라 법과대학(law schools)과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야 한다.¹⁸⁸⁾ 당 위원회는 지방법원 판사(High Court Judge)가 위원장이 될 수 있으며 12명의 위원들은 barrister, solicitors, Inns of Court위원회, 법과대학, 대학교 그리고 법률기술학교(polytechnic law schools), 특정분야의 법률심무분야, 그리고 명망 있는 비법조인들로 구성해야 한다고 하였다.¹⁸⁹⁾

판사들은 Lord Chancellor의 자문위원회의 조력을 받을 수 있지만, 협회는 판사들의 감독하에 자체 윤리규정(own Code of Conduct)을 유지할 수 있다.¹⁹⁰⁾ 때로는 barristers와 solicitors가 법원의 잘못 때문에 비난받기도 하기 때문에 법조 옴브즈만의 책무는 법정의 운영상 발생한 문제(allegations of mismanagement by courts and tribunals)까지 담당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예를 들면 법원행정상 실수 때문에 발생한 재판지연문제 등이 있다.¹⁹¹⁾

당 협회(the Bar)는 barristers와 solicitors의 직업상의 구별은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¹⁹²⁾ barristers의 분리된 역할은 확실한 이점들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①barristers는 홀로 개업활동을 하기에 국가,

186) QUALITY OF JUSTICE, 앞의 글, §§ 19.3-5:23-24.

187) Id. § 19.28.

188) Id. § 19.30. “

189) Id. § 19.31.

190) Id. § 18.9-10.

191) Id. § 18.12.

192) GEN. COUNCIL OF THE BAR, JUSTICE IN DANGER: THE BAR'S CAMPAIGN FOR JUSTICE FOR ALL 8 (1989) (a consultative paper).

solicitors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독립적이다. ②변론과정에서 전문성 ③무차별배정법(cab-rank rule)에 의해 고객은 barrister를 최대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¹⁹³⁾ ④사법부의 감독과 동료직렬규율(peer group discipline)에 의한 높은 기준의 유지 등이 이런 이점들이라고 주장되었다.¹⁹⁴⁾ 당 협회는 통상 상급법원에서 검정을 거친 solicitors에게 변론권을 부여하는 판사의 권한을 반대해 오지는 않았지만 이런 권한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쉽게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전문가집단에 이런 자격을 인정하거나 제외하는 권한을 정부기관에 부여하는 것은 반대하였다.¹⁹⁵⁾ 더구나, 그린보고서가 제안한 변론자격증제도는 barristers의 변론에 대한 특화와 변론의 질을 담보할 수 없기에 현명하지 않은 시스템이라고 하였다.¹⁹⁶⁾

당 협회는 일반 의뢰인이 직접 barristers를 접촉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였다.¹⁹⁷⁾ 또한 언제 법정에서 solicitors가 출두하는 것이 불필요한지 의뢰인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barristers가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¹⁹⁸⁾ 당 협회는 제휴, 회사법인화, 다양한 직렬의 협동업무는 아마 공공의 이익에 반한다고 밝히고 있다.¹⁹⁹⁾ 변호사가 사건결과에 대해 물질적 이해관계를 갖게 되는 결과가 되기에 당 협회는 승소사례금제도는 도입되지 않아야 한다고 하였다.²⁰⁰⁾ barristers는 solicitors와 다른 전문가그룹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서비스를 광고하는데 양식(good sense)을 유지할 것이라고 하였다.²⁰¹⁾

193) QUALITY OF JUSTICE, 앞의 글, §§ 12.15, .16.

194) QUALITY OF JUSTICE, 앞의 글, § 12.3.

195) GEN. COUNCIL OF THE BAR, JUSTICE IN DANGER: THE BAR'S CAMPAIGN FOR JUSTICE FOR ALL 8 (1989). GEN. COUNCIL OF THE BAR, A FINANCIAL EVALUATION OF EXTENDING RIGHTS OF AUDIENCE IN THE CROWN COURTS TO SOLICITORS 1-3 (1989).

196) QUALITY OF JUSTICE, 앞의 글, §§ 12.15, .16.

197) Id. §§ 12.38-40.

198) Id. §§ 12.51-52.

199) Id. §§ 15.1-22 특히, barristers와 solicitors사이의 제휴는 사실상의 양 직렬의 융합을 가져올 것이다.

200) Id. § 24.4.

판사임용문제와 관련하여서, 당 협회(the Bar Council)는 현상유지와 선발절차에서 Lord Chancellor를 제외할 것을 주장하였다.²⁰²⁾

당 협회는 그린보고서의 유언집행에 대한 첫 번째 옵션을 지지하였다. 즉, 유언집행은 solicitors, barristers, 공증인 그리고 특수전문가그룹에게 부여되어하며 선서의무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고 하였다.²⁰³⁾ 협회는 금융기관이 부동산양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 반한다고 주장하였다.²⁰⁴⁾

일반적으로 협회의 회원들은 barrister내부의 지위와 특히, chambers의 구조와 실무연수단계(pupillage programs)에 대한 경제원조위원회(financial commitment) 구조와 관련한 내부개혁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었다.²⁰⁵⁾

2. Barristers의 사무보조원협회(The Barristers' Clerks' Association: BCA)

BCA는 위에서 언급된 Barristers협회(General Council of the Bar)의 의견에 완전하고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²⁰⁶⁾ Barrister협회(Bar Council)에는 런던밖에 chamber²⁰⁷⁾를 두거나 런던내에 하지만 Inns of Court밖에 chamber를 두는 것을 반대하지 않았다.²⁰⁸⁾ 당 협회는 1990년까지 도서관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고 하였다. 도서관시스템에는 회의실, barristers's

201) Id. § 20.47.

202) Id. §§ 16.16-.19.

203) Id. § 22.4.

204) Id. § 22.12.

205) A Programme of Genuine Reform, COUNSEL, May/June 1989, at 3.

206) BARRISTERS' CLERKS' ASS'N, RESPONSE TO LORD CHANCELLOR'S GREEN PAPER ON THE WORK AND ORGANISATION OF THE LEGAL PROFESSION 1 (Apr. 28, 1989) [hereinafter BCA's RESPONSE TO GREEN PAPERS].

207) Chamber는 barristers의 사무실 또는 회의실을 의미하기도 하고 barristers의 모임을 의미하기도 함.

208) QUALITY OF JUSTICE, 앞의 글, § 20.20.: see Cowper, The New Bar of England, N.Y.L.J., Mar. 6, 1990, at 2, col. 3.

사무보조원, 컴퓨터화된 회계시스템, 통신장비, 복사 및 프린트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이었다.²⁰⁹⁾

BCA의 대응은 Lord Chancellor의 그린보고서에 있었던 약간의 오류를 수정하려는 의도를 가졌다.²¹⁰⁾ 예를 들면, barrister는 사무보조원을 두도록 의무화 되지 않았다고 수입료협상을 할 수 없다는 것들이다.²¹¹⁾

3. Solicitor협회 (The Law Society)

그린보고서에 대하여, 법률전문가그룹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solicitors를 대변하여 Law Society는 교육 및 운영에 대한 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 on Education and Conduct)에서 Lord Chancellor가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반대하였다. 그 대신 도입된 기구로서 법조업무위원회(Legal Affairs Commission)를 지지하였다. 당 위원회는 일반이이 의장이 되고, 판사, barristers, solicitors, 법학교수(academic lawyers) 그리고 다수의 일반인으로 구성된다.²¹²⁾ 당 위원회는 barristers와 solicitors의 공통교육과정체계를 위한 준비를 한다.²¹³⁾

Law Society는 제한된 변론자격증을 필요 없는 복잡한 체계라고 비판하면서 solicitors가 2년 동안 자격유지, 일상적 실무업무, 그리고 그 분야의 훈련을 거친 후 형사 또는 민사부분에서 완전한 변론자격증을 부여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제시하였다.²¹⁴⁾ 소송의뢰인이 solicitors가 barrister

209) QUALITY OF JUSTICE, 앞의 글, §§ 20.28-.29; see GEN. COUNCIL OF THE BAR, A COMMENTARY FOR THE BAR COUNCIL ON THE WHITE PAPER, annex A § A.3 (1989); Cowper, 앞의 글, at 2, col. 3.

210) BCA'S RESPONSE TO GREEN PAPERS, 앞의 글 241, at 4; see also Gibb, 앞의 글 242, at 5, col. 2.

211) BCA'S RESPONSE TO GREEN PAPERS, 앞의 글 241, at 4; see also Gibb, 앞의 글 242, at 5, col. 2.

212) LAW SOC'Y, STRIKING THE BALANCE: THE FINAL RESPONSE OF THE COUNCIL OF THE LAW SOCIETY ON THE GREEN PAPERS §§ 1.4-.6 (1989) [hereinafter STRIKING THE BALANCE].

213) Id. § 4.13; Euro Law Degree, LAW SOC'Y GAZETTE., May 17, 1989, at 8.

214) STRIKING THE BALANCE, 앞의 글 246, §§ 4.9-.12.

와 함께 법정에 참여할 지를 결정하도록 해야 하고, solicitors가 판단하길 이런 동반결정(retention)이 사건취급을 심각하게 방해할 수 있으면 동반결정을 파기할 권한이 solicitor에게 부여되어야 한다고 하였다.²¹⁵⁾ 당 협회는 고객이 직접 barristers와 접촉할 수 있는지 여부와 barristers의 제휴가능성은 barristers협회의 문제로서 직답을 하지 않았지만 위의 허용계획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였다.²¹⁶⁾ 유럽연합의 제한정책과 solicitors에 대한 잘못된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 Law Society는 다양한 직렬의 합동업무(multi-disciplinary practice)에 대해서는 자제하는 모양새를 취하며 완전히 비판적이지는 않지만 사실은 합동업무 제한을 철폐하는 것을 강하게 찬성하고 있다.²¹⁷⁾

당 협회(Council of the Law Society)는 법학교수, 변론을 하지 않는 solicitors와 barristers가 변론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다는 법관임용안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찬성하고 있었다.²¹⁸⁾ 왕립 자문변호사단(Queen's Counsel: QC)지위는 순전히 능력에 따라야 하고 법학교수, 실무가, 비실무가에게도 부여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²¹⁹⁾ 그리고 모든 변론수행자(advocates)는 동일한 법복(court attire)을 착용해야 한다고 하였다.²²⁰⁾

유언집행이 lawyer에게만 허용되어야 할지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유언집행에 대한 철저한 규제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²²¹⁾ 당 협회는 부동산양보업무를 일정한 기관들에게도 확장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의론하지 않았다.²²²⁾ 승소사례금(contingency fees)은 허용되지 않아야 하지만 승소하는 경우에 일반적인 수수료(normal fees)를 회복할 수 있는 "Speculative funding(모험적 재정지원)"은 허용되어야 한다고 하였다.²²³⁾

215) Id. § 5.9.

216) Id. §§ 5.3, .5-.6.

217) Id. §§ 6.6-.19, .21-.22.

218) Id. at § 5.13.

219) Id. § 5.11.

220) Id. § 5.14. Reeves, Wigs, Gowns and All That, 139 NEW L.J. 1094 (1989).

221) STRIKING THE BALANCE, 앞의 글, §§ 3.8-.10 & annex B.

222) Id. §§ 2.5-.16 & annex A.

4. 다른 법률단체들

청년solicitors그룹(Young Solicitors' Group)은 승소사례금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반면에 변론권확대와 판사임용에 대해서는 매우 적극적이었다.²²⁴⁾ 반대로, 법관회의(Judges' Council)의 대응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난을 했다.²²⁵⁾

법률문제참여그룹(Legal Action Group)은 lawyers들의 공공서비스제공과 특히 공익법률구조문제(legal aid issues)에 대해 특히 미약하는 것을 조사하지 않았다고 그린보고서를 강하게 비난하였다.²²⁶⁾ 본 참여그룹은 법률전문가집단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 통제의 강화가 정치적으로 위험한 결과를 가지고 올수 있다고 반대하였다.²²⁷⁾ 즉, 당 협회는 행정권이 법률전문가에게 그런 통제권한을 갖는 것은 헌법적으로 옳바르지 않다고 하였다.²²⁸⁾ 본 참여그룹에 의하면, 그린보고서의 법정변론권확대계획은 barrister협회(the Bar)와 사법부(the judiciary)에 때 늦은 신뢰를 주는 희망 없는 열빠진 시도라고 하였고 하면서 반드시 입법적으로 solicitors에게 법정변론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²²⁹⁾

런던형사분야solicitors협회(London Criminal Courts Solicitors' Association)는 저스트초이스(Just Choice)지에서 solicitors의 온전한 변론권을 찬성하였으며 barrister에게 고객이 직접 접촉하는 것을 찬성하였고 가발과 법가운(wigs and gowns)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였다.²³⁰⁾ Solicitors 불만처리국(Complaints Bureau)의 조사위원회(Investigation Committee)

223) Id. §§ 9.4-.14.

224) Official Reaction, 139 NEW L.J. 149, 149 (1989).

225) Responses Round-up, COUNSEL, May/June 1989, at 32.

226) Smith, Public Service and Civil Liberties—The Legal Action Group's View, 139 NEW L.J. 144, 144 (1989).

227) Id.

228) Id.

229) Id.

230) Responses Round-up, 139 NEW L.J. 603, 603 (1989).

는 고객의 불만을 다루기 위해 독립적이며 소비자위주(consumer-oriented)로 구성된 새로운 조직을 제안하였다.²³¹⁾ 일반인참여사무국(Office of Lay Observer)대신 법조실무에 대한 옴브즈만제도를 제안하였다.

영국의 유럽공동체법률전문가협회임위원회(The United Kingdom Delegation to the Council of the Bars and Law Societies of the European Community)는 그린보고서가 유럽공동체의 실무와 규정과 모순되지 않는지의 문제를 제시하였다.²³²⁾ 나중에는 법률전문가들은 반드시 정부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하며 공동업무가능성(multi-disciplinary) 또는 다국가적 실무업무(multi-national practices)를 허용할 때는 미국과 유럽 공동체의 법률실무의 영향을 반드시 고려할 것을 요구하였다.²³³⁾

5. 대학교, 학생 그리고 교수(Tutors)

법과대학교 학장들(Heads of University Law Schools)은 Lord Mackey의 강력한 자문위원회안과 공동의 직무연수시스템(common system of vocational training)을 지지하지만 자문위원회가 lawyers의 연수와 직무감독(conduct and training)을 동시에 담당해야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시하였다.²³⁴⁾

법학교육위원회의 barrister학생위원(Bar students of the Council for Legal Education)들은 solicitor에게 변론권을 확대하는 것에 찬성하였다.²³⁵⁾ 또한 의무적 장학금을 포함하여 실무수습기간(pupillage procedures)의 개선을 원했다. 캠브리지대학교 Downing College의 고참교수(senior tutor)은 만약 그린보고서가 채택된다면, Barrister협회(Bar)는

231) Id.

232) Responses Round-up, 앞의 글, at 32.

233) Toulmin, The Council of the Bars and Law Societies of Europe, COUNSEL, July/Aug. 1989, at 8.

234) Responses Round-up, 앞의 글, at 603.

235) Bar Students Want Shake-up, LAW SOC'Y GAZETTE, Apr. 5, 1989, at 7.

barrister신규모집에 난항을 겪을 것이고 결국, 많은 chambers(barrister 사무실)들은 대형 solicitor로펌의 법정업무를 하는 부속물로 전락할 것이고 이런 것으로 누가 이득을 볼 것인가(Cui bono)라는 주장을 하였다.²³⁶⁾

6. 상업기관들(Commercial Organizations)

소비자연명(Consumer Association)은 변론권확대, 상업기관의 부동산양도업무, 다양한 직렬의 합동업무 등에 대해서 환영하였다.²³⁷⁾ 비슷한 반응이 영국보험협회로부터 나왔고 당 협회는 모험적 사례금합의(speculative fee arrangements)를 지지하였다.²³⁸⁾ 공인부동산거래인회의(Council for Licensed Conveyancers)은 새로운 회원이 생기길 기대하고 있었던 반면에²³⁹⁾ 전국solicitor부동산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Solicitors Property Centres)는 부동산양도업무를 수행할 실무자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을 주장하였다.²⁴⁰⁾

7. 귀족원(House of Lords)

귀족원에서 긴 토론 속에서, 항소법원 형사부 수석법관(the Lord Chief Justice)인 Lane경은 특히 자문위원회안에 대해 비판적이었다.²⁴¹⁾ 그의 의견에 의하면 변론통제권(control of advocacy)이 공무원(civil servants)의

236) Hopkins, The Effects on Recruitment to the Bar, COUNSEL, May/June 1989, at 20, 21.

237) Consumer Association Gives the Thumbs-Up, LAW SOC'Y GAZETTE, May 10, 1989, at 4.

238) Insurers Jump on the Bank Wagon, LAW SOC'Y GAZETTE, May 10, 1989, at 4.

239) Official Reaction, 앞의 글, at 149.

240) NASPyC Wants to Keep Independent Advice, LAW SOC'Y GAZETTE, May 10, 1989, at 4.

241) Fierce Opposition May Prompt Government Re-Think, LAW SOC'Y GAZETTE, Apr. 12, 1989, at 2.

손에 쥐어진다고 하였다. 전 Lord Chancellor였던 Hailsham경은 이미 Mackay의 안은 사법부의 독립을 저해할 것이라고 하였다.²⁴²⁾ 반면에 Coleraine경은 법률전문가에 대한 정부의 간섭과 무제한의 부동산양도업무의 확장을 반대하였지만 변론권의 확대를 지지하였다.²⁴³⁾ Gifford경은 변론권의 확대를 지지했지만 변론권증명제의 실행은 찬성하지 않았다. Baroness가 위원장으로 있는 전국소비자의원회(National Consumer Council)는 민사재판에서 solicitors가 의뢰인을 대리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찬성하는 것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라고 예전부터 주장하였다.²⁴⁴⁾

8. 미국의 반응(American Responses)

미국의 한 법학교수가 그린보고서가 언급하고 있는 자유방임주의(laissez-faire ideology)와 과도한 정부의 통제가 들어간 실제 안과의 모순점을 언급하였다.²⁴⁵⁾ 미국변호사협회장(president of the American Bar Association)은 미국의 경우는 변호사의 법조윤리규정(American lawyers' Code of Professional Conduct)이 의회의 승인사항인 것에 비교하여 Lord Chancellor산하의 자문위원회의 기능에 회의적이었다.²⁴⁶⁾ 런던에서 열린 “미국에서의 법조개혁에서의 교훈”이라는 회의에서 미국대표자들은 만장일치로 barristers와 solicitors가 하나의 법률전문가로 융합되지 않아야 할 것을 권유하였다.²⁴⁷⁾

그린보고서의 파급효과에 대해 자문을 구하기 위해 barrister협회에서

242) Lord Chancellor Launches Counter-Offensive on Green Paper Critics, 139 NEW L.J. 318, 318 (1989).

243) Peers Debate Green Papers, 139 NEW L.J. 427, 427 (1989).

244) ORDINARY JUSTICE, 앞의 글, at 237. The National Consumer Council is an independent, government-supported entity, which lobbies on behalf of consumers. THE LAWBOOK, 앞의 글, at 124.

245) Abel, Contradictions in the Green Papers, LAW SOC'Y GAZETTE, Mar. 22, 1989, at 14.

246) Raven, The American Experience, LAW SOC'Y GAZETTE, Mar. 22, 1989, at 15.

247) Don't Follow Us Says US, LAW SOC'Y GAZETTE, June 7, 1989, at 6.

초청한 미국변호사는 “결국에는 당신들이 하는 것은 당신업무이다.”라고 했지만 그는 강력히 두 전문가체제(two-branch system)를 유지하는 것을 옹호하였다.²⁴⁸⁾ 시카고에서 온 실무변호사는 승소사례금안“contingency fee proposal”은 미국식 모델이 아니라 스코틀랜드 모델을 따랐으며 보수적이라고 평가했다.²⁴⁹⁾

VI. 백서(THE WHITE PAPER)

1989년 7월 19일, Mackay경이 법조개혁, 법률서비스 그리고 미래에 대한 계획에 대한 백서를 발간하였다.²⁵⁰⁾ 본 백서는 개혁안이 나오기 난 후 각계의 반응에 대한 폭넓은 보고서로서 Lord Chancellor가 수정한 개혁안을 하나의 보고서로 묶은 것이었다.²⁵¹⁾

1. 백서의 주요내용

1) 법학교육과 업무윤리(Legal Education and Conduct)

본 백서에서 Lord Chancellor는 법학교육과 업무윤리에 대한 자문위원회안을 반복하였고 이전에 제시한 인원구성을 유지하지만 완전히 정부로부터 독립적으로 움직이도록 하였다.²⁵²⁾ 교육에서 특정의 필수과목을 제

248) Defending the System, COUNSEL, May/June 1989, at 25 (quoting George Koelzer, an international marine insurance lawyer in New Jersey).

249) Herzel, The Green Papers: A View from the US, 133 SOLIC. J. 537, 537 (1989).

250) LORD CHANCELLOR'S DEP'T, LEGAL SERVICES: A FRAMEWORK FOR THE FUTURE, 1989, MND. 740 [hereinafter WHITE PAPER].; Archer, Legal Reforms to Go Ahead, Press A. Newsfile, July 19, 1989.

251) The 2,050 responses came from the following sectors: 53% from solicitors; 13% from barristers; 3% from the judiciary; 6% from legal executives, conveyancers, law students, legal academics, financial institutions, and related professionals; and 25% from the public in general. Id. at 44(annexA).

252) Id. §§7.9-11, 13.

시하지 않고, 백서는 연수, 계속적 직무연수(continuing education), 특화 단계에 대한 시험과 조언을 자문위원회에게 돌렸다.²⁵³⁾ Mackay경은 음브즈만은 정부와 전문가집단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하기에 자신이 제안한 법정기구로서 법률서비스음브즈만을 고집했지만 Bar Council(barrister협회)과 Law Society(solicitor협회)와 공동의 업무수행규정을 만들기 위해 계속 협의하기를 제안하였다.²⁵⁴⁾

2) 사법부(The Judiciary)

변론자격증제도를 포기하고, 판사로 임용될 최소요건은 다음과 같이 간소화된다.²⁵⁵⁾

판사보(Masters), 법원행정책임관(Registrars) 그리고 치안판사(Magistrates)²⁵⁶⁾:

상급법원(Supreme Court)에서 변론할 수 있는 권리 또는 군법원에서의 일반변론권의 7년 동안 유지

순회판사(Circuit Judges), 비상근법관(Recorders) and 비상근법관보(Assistant Recorders)²⁵⁷⁾: 형사법원(Crown court) 또는 군법원(Country Court)에서의 일반 변론권을 10년 이상 유지, 법원행정책임관(Registrar)으로 3년 이상 근무하는 것으로 순회법원판사(Circuit Judges)로 임용될 수 있다.

항소법원법관(Lord Justice of Appeal), 고등법원의 판사 또는 판사보(Judges or Deputy Judges of the High Court)²⁵⁸⁾: 항소법원과 고등법원

253) Id.§§9.1-11.

254) Id.§§10.9,.13.

255) Id.§§3.2-3.

256) Id.§15.5(iv).

257) Id.§15.5(iii).

258) Id.§15.5(ii).

에서 변론할 수 있는 일반변론권을 10년 이상 유지, 순회법원판사로 2년 이상 재직하면 상급법원(Supreme Court²⁵⁹)의 판사로 임용될 수 있다.

귀족원의 상임법관(Lords of Appeal in Ordinary)²⁶⁰: 상급법원에서 적어도 15년 이상 일반변론권을 유지하고 적어도 2년 이상 Lord Chancellor직을 유지하거나 영국과 아일랜드의 상급법원의 판사로 재직한 자.

3) 법정변론권(Rights of Audience)

Mackay경은 Bar와 Law Society (또는 적합한 다른 단체)가 정한 자격 기준을 가지고 확대하려고 한 법정변론권에 대한 변론자격증명제안에서 후퇴하였지만 Lord Chancellor, 항소법원 형사부 수석법관(Lord Chief Justice), 항소법원 민사부 수석법관(Master of the Rolls), Vice Chancellor(차관/부대법관)와 고등법원 가사부 수석법관(President of the Family Division)이 여기에 대해 동의권(concurrence)을 갖는다.²⁶¹ 또한 현재 보유하고 있는 변론권은 유지된다고 하였다.²⁶²

4) 왕립자문변호인단(Queen's Counsel: QC)

고등법원(High Court)이나 형사법원(Crown Court)에서 변론권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QC에 임명될 수 있다. 때로는 명예직으로 다른 lawyer에게도 부여된다고 하였다.²⁶³

5) 직접적 접촉(Direct Access)

Barristers은 일반 의뢰인으로부터 직접 사건의 설명을 들을 것인지는

259) 종전에는 Supreme Court는 항소법원, 고등법원, 형사법원을 지칭하는 것이었다. 현재는 대법원이 생기면서 이들 법원을 Senior Courts of England and Wales라고 부른다.

260) Id.§15.5(i).

261) Id.§§3.9-11.

262) Id.§3.16.

263) Id.§3.19.

그들 자신이 결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²⁶⁴⁾

6) 복합업무수행와 다국가적 업무수행

(Multi-Disciplinary and Multi-National Practices)

Solicitors와 다른 전문가들과의 업무제휴를 금지하는 법률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하였고²⁶⁵⁾ 이와 마찬가지로 barristers, solicitors 그리고 외국변호사간에 업무제휴를 방해하는 다른 규정도 유럽공동체의 정책을 받아들이고 예정한 1991년에는 삭제되어야 한다고 하였다.²⁶⁶⁾

7) 유언집행(Probate)

Lord Chancellor는 유언집행업무를 담당할 직업군(classes of people)을 추가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법정선서의무를 유지해야 한다고 하였다.²⁶⁷⁾

8) 승소사례금(Contingency Fees)

일반적으로는 승소사례금개념은 거부된 것으로 여겨지지만, 본 백서는 스코틀랜드에서 사용되고 있는 모험조건부수임료(speculative conditional fees)를 제안하였다. Lord Chancellor는 변호사수임료의 최대증가분을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고 하였다.²⁶⁸⁾

9) 부동산양도업무(Conveyancing)

부동산양도업무는 그린보고서에서 언급된 것처럼 반드시 비법률전문가에게도 허용되어야 한다고 하였다.²⁶⁹⁾

264) Id. §11.7.

265) Id. §12.2.

266) Id. §13.2-3.

267) Id. §§6.3-4, 6.

268) Id. §§14.2-4.

269) Id. §§5.5, 7-8.

본 백서에는 chambers에서 barrister의 실무업무수행에 대한 구조적 문제와 barrister의 사무보조원문제가 빠져있었다.²⁷⁰⁾ 또한 1999년 7월에 발간된 다른 백서에는 광고금지규정은 반경쟁적이라고 하고 있었는데²⁷¹⁾ 본 백서는 광고문제도 언급되어 있지 않았다.²⁷²⁾ 아마도, Mackay경이 그 당시 법률서비스광고에 대해 정식적 규제를 시도하지 않고자 했던지 현존하던 규제와 규제실무 그리고 이에 따른 변화가 개혁과 효율성이라는 총체적인 목표를 만족시키는 것으로 판단하였을 수도 있다.

2. 백서에 대한 반응²⁷³⁾

백서에 대한 각계의 반응은 그린보고서에 대한 반응과 일반적으로 같은 맥락이다. Mackay의 변론자격증계획안의 취소로 대부분의 논쟁은 변론권문제에서 Law Society와 Bar에서 반대하던 복합업무수행문제(multi-disciplinary practices)로 옮겨졌다.²⁷⁴⁾ Bar(barrister협회)는 복합업무수행이 허용되면 barristers와 solicitors가 대형 회계법인의 통제 하에 놓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Bar의 회장이었던 Desmond Fennell은 숙고 끝에 barrister가 제휴관계(partnerships)에 들어가지 않는 한, Bar는 미래에도 존속할 것이라고 하였다.²⁷⁵⁾

그러나 Bar는 변론권에 관한 결정은 행정권의 간섭 없이 판사들에게만

270) see de Wilde, Managing Chambers for Change, COUNSEL, Dec. 1989, at 14 (Chambers' constitutions proposed for internal operations).

271) No Exclusion for Professions, LAW SOC'Y GAZETTE, July 19, 1989, at 6; see, e.g., Bar Council Lifts Advertising Ban, LAW SOC'Y GAZETTE, July 19, 1989, at 8.; Gibb, 앞의 글 242, at 5, col. 2.

272) See, e.g., Buckhaven, Battered Images, 139 NEW L.J. 418, 418 (1989).

273) 전체적인 내용은 MJ Quinn, REFORM OF THE LEGAL PROFESSION IN ENGLAND AND WALES, 12 N.Y.L. Sch. J. Int'l & Comp. L. 277면 이하 참조.

274) E.g., Law Society Reaction, 139 NEW L.J. 998, 998 (1989); Bar's Response, 139 NEW L.J. 998, 998 (1989).

275) Ford, Package 'Complicated and Costly,' The Times (London), July 20, 1989, at 5, col.4.

부여되어야 한다고 했다.²⁷⁶⁾ 1989년 11월, Desmond Fennell은 자문위원회의 임명은 Lord Chancellor와 함께 Lord Chief Justice가 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²⁷⁷⁾ 그는 만약 변론권에 대한 규정이 자문의원회의가 제공하는 정보를 가지고 전문가집단에 의해 마련되고 판사들에게 승인을 하도록 제출한다면 판사가 거수기처럼 비취질 위험성이 있다고 하였다.²⁷⁸⁾

Fennell는 판사는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만약 판사들이 거수기가 된다면, 아니 처음 안에 따르면 정치적 거수기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기에 Fennell는 판사는 자문하는 기능을 보유하고 기획안의 초기에 관련해야한다고 했다.²⁷⁹⁾

Law Society는 solicitor의 변론권에 대한 규정은 판사들에 인하여 좌초할 수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²⁸⁰⁾ 1999년 7월 기자회견을 통해 Law Society의 회장인 Richard Gaskell경은 Mackay경은 Lord Chancellor와 자문위원회에 부여될 광범위한 권한을 축소하도록 설득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법률로서 solicitor에게 법정변론권을 확대하는 원칙을 소중히 간직하고, Law Society가 별개의 Bar를 유지하려는 보호책을 구체화하고 하고 있다고 했다.²⁸¹⁾ Grakell는 그의 정교하게 응축된 제안에서, 좀 더 개방적인 변론수행자의 선택을 위한 요구들은 barrister의 전문직을 분리하는 것(separate barristers' profession)을 찬성하는 것과 같은 축이라고 했다.²⁸²⁾ Bar를 돕기 위해, solicitor협회는 barristers들은 온전한 법정변론권 자격을 받드시 가져야 하며 barrister들은 제휴업무(partnership)를 반대하는 barrister자체 규정을 포기하도록 강요받아서 안 된다고 밝혔다.²⁸³⁾

276) Bar's Response, 앞의 글, at 998.

277) Gibb, Bar Fights for Judges to Decide Advocacy Rights, The Times (London), Nov. 22, 1989, at 9, col. 1.

278) Id.

279) Id.

280) Judges Veto Threat Revived, LAW SOC'Y GAZETTE, Oct. 4, 1989, at 3.

281) Law Society, Government Has Moved Substantially in Our Direction, Say Solicitors, July 19, 1989, at 1 (press release).

282) Id. at 3.

283) Proposals Welcomed by the Law Society, The Times (London), July 20, 1989, at 5, col. 8.

예상한대로, 상업적 기관에서는 부동산양도업무의 수행직렬확대가능성을 특히 환영했다.²⁸⁴⁾

한 법률문제논평가는 그린보고서로부터 가장 급진적 변화는 Lord Chancellor의 자문위원회를 규제기구가 아니라 단순히 자문기구로 된 것이라고 평가하였다.²⁸⁵⁾ 아마도 새로운 영국인권헌장(English Bill of Rights)²⁸⁶⁾은 사법부를 자문위원회를 통한 과도한 행정부의 간섭으로부터 보호하는데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의견도 있다.²⁸⁷⁾

본 백서에 대한 귀족원구성원(the peers)들 중에서, Boyd-Carpenter경은 Mackay경의 용기에 감사를 보냈다.²⁸⁸⁾ 전 Lord Chancellor였던 Elwyn-Jones경은 사법부의 독립성의 훼손과 Bar의 독립성이 제거되었다는 것에 가장 반대를 하였고 그와 Meston경은 공적법률구조제도평가(legal aid evaluations)가 결여하였다는데 실망감을 표하였다.²⁸⁹⁾ 훼손과 저하에 관련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Lord Hutchinson of Cullington에 따르면, solicitor의 법정변론권문제가 모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²⁹⁰⁾

284) See, e.g., Initial Responses, 139 NEW L.J. 998, 998 (1989) (Royal Institute of Chartered Surveyors).

285) Hudson, White Paper Relief, 139 NEW L.J. 1041, 1041 (1989).

286) Juss, Silent Rights, 139 NEW L.J. 1069, 1069 (1989). Scarman, Bill of Rights That's Ours for the Taking, The Times (London), Jan. 4, 1990, at 12, col. 2.; see also M. ZANDER, A BILL OF RIGHTS? (3d ed. 1985).

287) 판사자격에 대한 자세한 토론은, see Stevens, The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The View from the Lord Chancellor's Office, 8 OXFORD J. LEGAL STUD. 222 (1988).

288) 510 PARL. DEB., H.L. (5th ser.) 785 (1989).

289) Id. at 781-82.

290) Id. at 784.

VII. 1990년 이후의 법률전문가 관련 제도발전

1. 1990년 법원과 법률서비스 법(THE COURTS AND LEGAL SERVICES ACT 1990)

법률전문직에 대한 개혁은 피할 수 없는 정치적인 이슈가 되었다.²⁹¹⁾ “변화의 시점은 지금이며 이것은 너무 중대하여 정부에 의한 일시적 후퇴는 단순히 인과응보의 벌을 받는 날을 간신히 잠시 피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앞의 연설은 여왕이 한 것으로 1989년 11월 21일 의회의 개원연설에서 Elizabeth여왕은 1990년의 정부의 가장 중요한 우선목표를 세웠다.²⁹²⁾ 여왕의 연설은 영국사법개혁(British legal profession)은 의회에 제출 될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당 법안은 민사적 정의실현을 증대하고 법률서비스에서 선택권을 증대시키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하였다.²⁹³⁾

1) 법안의 제출과 경과

1989년 11월말, Mackay경은 사법개혁(reform of the legal profession and legal services)에 대한 법안이 Civil Justice Review, 그린보고서 그리고 백서를 기초로 마련되었다고 발표하였다.²⁹⁴⁾ Civil Justice Review는 고등법원(High Court)과 군법원(County Courts)사이의 사건배당과 이송 문제에 대한 새로운 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며 7월말 Lord Chancellor가 검토하였다.²⁹⁵⁾

291) Smith, Pausing for Thought, COUNSEL, May/June 1989, at 18.

292) The Queen's Speech on the Opening of Parliament on Tuesday, 21 November 1989 [hereinafter Queen's Speech]. For discussions of television broadcast of House of Commons Proceedings, see Kinsley, Democracy Theatre, NEW REPUBLIC, Jan. 1, 1990, at 4; Fairlie, Maggie's Flying Circus, NEW REPUBLIC, Jan. 1, 1990, at 22.

293) Queen's Speech, 앞의 글 327.

294) Legal Reform Bill Start Next Month, The Times (London), Nov. 24, 1989, at 13, col. 7.

Lord Chancellor의 법원과 법률서비스 법안은 1989년 12월 6일 발간되었다.²⁹⁶⁾ 대부분의 사안에서 당 법안은 백서에서 밝힌 규정을 반복하였지만 평범한 일상용어에서 정확하고 명확한 법률용어로 바뀌어졌다.²⁹⁷⁾

법안출간 하루 뒤에 나온 법원과 법률서비스법안에 대한 Law Society의 초기반응은 법정에서 barrister와 solicitor의 불필요한 이중적 업무(double-manning)를 종식하는 것이라고 환영하였다.²⁹⁸⁾ Law Society 회장인 David Ward은 barrister에 대해 어떤 위협도 없다고 예상하였다. 또한 법안은 고객의 필요에 barrister의 서비스 맞추기 위해 현대화하여 barrister의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하였다.²⁹⁹⁾

퇴임예정인 Bar협회장인 Desmond Fennell은 고객의 법정접근여부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barrister들은 이 개혁안이 잘못된 목표(wrong end)로부터 출발했다고 했다.³⁰⁰⁾ 법률전문직에 대한 땀질식 처방은 법률서비스에 대한 문제의 해결책이 되지 못할 것이고 barrister들은 본 개혁안은 재정문제가 촉발한 장식적 변화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³⁰¹⁾

2) 1990년 법의 주요 내용(Court and Legal Services Act 1990)³⁰²⁾

295) Id. ; Ford, Mackay Pledges Flexible and Speedier Legal System, The Times (London), July 20, 1989, at4, col.1.

296) LORD CHANCELLOR, COURTS AND LEGAL SERVICES BILL [H.L.], H.L. Bill 13 (Dec. 6, 1989) [hereinafter the COURTS AND LEGAL SERVICES BILL 13]. Scots Law Reform Row, 140 NEW L.J. 879, 879 (1990).

297) 법안의 출판명령은 의회에서 진행되는 5단계의 입법절차중의 첫 번째 검토(reading)을 구성한다. 입법절차는 법안출판을 거치고, 두 번째 reading은 논쟁단계이고, 그리고 위원회 단계(증보된 법안에 대한 상세한 검토단계), 보고단계(증보된 법안의 검토) 그리고 3번째 reading(마지막 논쟁)을 거친다.

298) Law Society, Real Achievement for Law Society, Dec. 7, 1989, at 1 (press release).

299) Id.

300) Bar Sees No End to Battle, LAW SOC'Y GAZETTE, Dec.13, 1989, at 3.

301) Id.

302) Richard ward & Amanda akhtar, English legal system,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371면 이하; Gary Slapper & David Kelly, The English Legal System, Routledge, 2010. 573-574면 이하를 주로 참고함.

1980년대의 기나긴 논쟁의 결과로서 1990년 법원 및 법률서비스법이 제정되었다.

1990년 법의 기본 정신은 Section 171(1)에 나열되어 있다.

법의 일반 목적은 영국과 웨일즈의 법률서비스발전을 위한 것이다. 특히, 법률관련 서비스를 개설할 있는 더 나은 제도와 방법에 대한 조항을 제정하여 변론권, 소송진행, 부동산양도 및 유언집행서비스의 발전을 도모하고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직업들의 선택폭을 넓히고 적절하고 효율적인 정의실현을 도모한다.

solicitors와 barristers의 현존하는 변론권을 유지하면서³⁰³⁾ 동법 section 17(3)은 변론권은 다음의 경우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일반적 원칙을 확립하였다.³⁰⁴⁾

(i) 적합한 자격의 소유

(ii) 효과적이고 적용가능한 직무윤리를 가진 전문직업단체(professional body)의 회원

(iii) 사건에 반대하는 이유(objectional grounds)때문에 법률서비스 제공을 중단하지 않는 것을 보증할 수 있는 협약의 존재

(iv) 적합한 직무윤리의 존재

본법은 상급법원에서는 barristers만 변론을 할 수 있었던 독점권을 폐지하고 solicitors도 상급법원에서 변론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했으며³⁰⁵⁾ 법정변론권이 다른 전문직업군에게도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³⁰⁶⁾ 송무(litigation)에 관한 규정³⁰⁷⁾과 유언집행규정³⁰⁸⁾도 완화되었다. 동법 section 66에서 solicitors가 아닌 자와 제후관계

303) § 31에서 33까지.

304) 동 규정은 2007년 Legal Service Act에 의해 대체되었다.

305) Richard ward & Amanda akhtar, English legal system,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371면.

306) § 27.

307) § 28.

308) § 55.

(partnership)를 형성하는 것을 금지하던 것을 철폐하였다.³⁰⁹⁾ 그러므로 본법은 법률서비스가 제공되는 기초환경에 대한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동법은 법률전문가집단의 자체 규율기관에서 처리하던 의뢰인의 불만사항을 조사할 권한을 가진 Legal Services Ombudsman을 신설하였다. 그런데 모든 이런 사항은 2007년의 법률서비스법(Legal Services Act)에 의해 중대하게 영향을 받았다

2. 1999년 법률조력에 관한 법(Access to Justice Act 1999)

1999년의 The Access to Justice Act은 법률서비스에 보조금에 대해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이전까지 사용되어 왔던 법률구조(legal aid)를 대체할 2가지 별개의 계획을 마련하였고, 사적 기금을 통한 변호사의 보수를 통제하던 몇몇 규정을 완화하였다.³¹⁰⁾

본법의 Part III은 법원및법률서비스법이 정신을 계속 이어갔다. 즉, 적합한 자격을 보유한 모든 lawyer는 모든 소송절차에서 온전한 변론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일반원칙을 확립하였다.

본법은 Legal Services Ombudsman에게 부가적 권한을 부여 하였을 뿐만 아니라 변론권의 변경과 송무(litigation)를 수행하는 권리의 변경에 대한 승인절차를 간편하게 하였다.

3. 2007년 법률서비스법 (Legal Services Act 2007)

2007년의 법률서비스법은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는데 본법은 법률서비스위원회(Legal Services Board)를 설립하여 법률전문직업군을 규율할 전

309) barristers에게는 이런 제한이 없었다. 다만, solicitors와 barristers는 자체 규율에 의해 복합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해왔었다. Richard ward & Amanda akhtar, English legal system,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372면.

310) § 27-28..

체 체계의 변화를 가져왔다. 당 위원회의 목표는 규제절차와 매커니즘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동법은 법률관련업무를 수행하는 기준과 윤리문제 그리고 법률관련활동을 하는 단체에 면허를 주는 방안에 대한 기반(framework)을 형성하였다. 동법은 무엇이 여기서 언급하는 법률관련업무(reserved legal activity)가 되는지를 정의하고 있으며 동법 section 13에서 어떤 자가 이런 법률관련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다루고 있다. 동법은 법률불만처리관(Office for Legal Complaints)제도를 신설하고 사법불만처리에 대한 상세한 처리절차와 구조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은 lawyer와 관련되고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하고 잡다한 규정들이 있다.

4. 법률관련업무수행에 대한 현재의 모습³¹¹⁾

2007년 Legal Services Act는 기본적으로 2005년 발간된 ‘법률서비스의 미래: 소비자를 최우선으로(The Future of Legal Services: Putting Consumers First)’라는 백서의 제안서에 기초하고 있다.³¹²⁾ 2005년의 백서는 David Clementi 보고서의 제안내용에 기초하고 있다.³¹³⁾ 위 보고서는 David Clementi경이 위원장이 되어서 법률서비스규제에 대한 검토를 한 것으로 기본적으로 두 가지 점에 기초하고 있다. ① 어떤 규제제도가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며 독립적인 법률전문가집단(legal sector)에서 최고조로 경쟁과 혁신 그리고 공익과 소비자이익을 증대시킬 것인가? ② 공익과 소비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독립적인 제도를 마련한다. 이 제도는 포괄적이고 신뢰할 수 있으며 변함없고 유연하면서 투명하며 더 이상 규제적이지 않고 무거운 짐이 되지 않는 그런 제도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

311) Richard ward & Amanda akhtar, English legal system, oxford university press, 2008,373-374를 주로 참조.

312) 당 백서는 다음 사이트 참조. Cm6679: www.dca.gov.uk.

313) Competition and Regulation in the Legal Services Market - A Report following the Consultation In the Public Interest? (2003).

었다. Clementi의 보고서는 2004년 12월에 최종본이 출판되었다.³¹⁴⁾ 당 보고서는 법조영역(legal landscape)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많은 중대한 제안들을 담고 있었다. 위 보고서의 중점사항은 3가지로 나뉘볼 수 있다.

- 현존하는 규제제도의 복잡함과 효과가 없다는 문제
 - 전문가집단에서 불만을 처리와 관련된 현재의 접근법에 대한 문제
 - 현재의 실무업무수행에 있어서 제한적(restrictive nature)이라는 문제
- 2007년 법은 백서에서 표현되었듯이 “규제의 미로”를 제거하는 새로운 체제(framework)를 제공하였고 lawyer와 다른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법률서비스시장을 창설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³¹⁵⁾

Clementi 보고서는 대안적 비즈니스구조들을 제안하였다. 여기서 그의 핵심적인 제안은 다른 배경을 가진 lawyers가 공동으로 일반인에게 법률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반드시 취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solicitors가 다른 전문가집단과 함께 업무제휴를 할 수 없도록 한 법적 제한을 철폐하고 Bar Council이 barristers가 다른 전문가와 업무제휴관계를 맺는 것을 허용하도록 자체규정을 바꾸는 것으로 달성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런 변화는 barristers와 solicitors가 함께 법률실무윤리 규정(Legal Disciplinary Practices)을 만들고 비법률가(non-lawyers)가 파트너로써 경영상 혹은 행정상 지위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잘 알려진 기업들이 법률서비스시장에 들어가는 것이 허용될 경우 법률서비스사업을 시작할 의향을 표명해 왔다. 그러나 Clementi는 lawyers와 비법률가가 함께 파트너십을 형성한다고 하면 업무윤리기준(maintenance of ethical standards)을 유지하기 위해 특별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³¹⁶⁾

314) Final Report of the Review of the Regulatory Framework for Legal Services in England and Wales (2004).

315) Department for Constitutional Affairs, Consumers: 21st Century Legal Services (2006).

정부는 Clementi 보고서를 환영하였고 당 보고서의 내용은 폭넓게 수용되었다. 이미 당 보고서가 발표되기 전, Lord Chancellor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방식을 조사하고 연구하는 것에 대해 분명히 찬성한다고 밝혔다.³¹⁷⁾

Lord Chancellor는 Solicitors협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나는 여러분들이 Heineken의 접근방식을 받아들이고 법률서비스가 다른 서비스가 도달하지 못한 사회구석까지 이르기를 바라고 있으며.... 또한 나는 모든 사람이 금전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장, 물론 불우한 환경의 사람은 무료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법률시장을 보기를 원합니다. 법률시장에서 쇼핑센터가 아마 가장 명백한 본보기일 것입니다. 그 쇼핑센터에서는 고용, 거주, 빚, 가정문제와 같은 문제들이 함께 다루어지고 또한 이런 것은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solicitors를 고용하여 법률문제를 해결하여야 합니다. 살아남고 번성하기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오늘 법률시장에서 경쟁해야하고 우리는 변화와 개혁을 겁내서는 안 됩니다.”라고 밝혔다.

2007년 The Legal Services Act는 Lord Chancellor가 행한 연설에서 밝힌 내용을 위한 기본 틀/framework)을 제공하였다.³¹⁸⁾ 2007년 법의 Section 12는 본법상의 법률사무(reserved legal activities), 변론권, 소송업무의 수행방식(conduct of litigation), 법률문서작성의 범위(reserved instrument activities), 유언실행업무, 공증사무 그리고 선서관리(administration of oaths)에 관해 다루고 있다. 본 법에서 규정된 업무를 자격 없는 자가 행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을지도 모르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므로 본 법상에 규정된 업무(reserved activities)는 자격을 부여받은 자가 수행하여야 한다.³¹⁹⁾ 동 법상의 업무는 Barristers 혹은 Solicitors인

316) 앞의 글, Paras F11과 F25.

317) 아래의 연설은 the Law Society's Annual Conference에서 행한 연설이다. 26 September 2003.

318) Richard ward & Amanda akhtar, English legal system,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374면.

319) 2007 Act §§13-14.

변호사는 barrister와 solicitor를 규율하는 적절한 관리자가 그 권한을 부여할 것이다.³²⁰⁾ 그러나 다른 전문가들은 동법 schedule3상의 예외로 인정받은 자인 경우에만 이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결국, 동법의 전체적인 효과인 barrister와 solicitor의 기능은 2007년 법이 완전히 효력을 발휘하는 때에 새 법률의 토대 하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5. 허가받은 단체 (Licensed Bodies)

영국에서 그동안 논의의 핵심은 법률서비스제공자의 폭을 넓이는 것에 있다. 2007년 법의 Part 5는 법률서비스확대를 위한 권한배분구조에 대한 범조항을 담고 있다. 동법은 어떤 단체가 허가받은 단체가 되는지 규정하고 있다. 허가받은 단체에는 Legal Service Board 또는 면허를 발부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마련된 공인관리자(approved regulator)가 있다.³²¹⁾ 동법에는 면허를 부여하는 권한의 지정, 그 절차, 승인, 변경, 면허의 통제에 관한 복잡한 규정이 존재한다.³²²⁾ 면허업무를 담당한 기관(relevant licensing authority)에서는 허용되지 않은 자(non-authorized person)에게 법률상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도록 허가할 것인지는 신청서 및 면허를 부여하였을 때 효과를 고려하여 조건적 혹은 무조건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이런 방법을 통하여 비자격자(non-authorized person)가 소유거나 경영하는 기관도 법률이 규정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Solicitors가 다른 직업영역의 사람들과 업무제휴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예를 들면, Solicitors와 Barristers가 공동으로 새로운 형태의 법률회사구조(Legal Disciplinary Practice)를 형성할 수 있으며 그 곳에서 경영업무와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비법률가도 파트너가 될 수도 있다. 또한 Co-op(신협), Tesco, AA와 같은 기존의 회사들도 하나의 생산품과 서비스의 한 종류

320) 2007 Act § 18.

321) 2007 Act § 73.

322) 2007 Act §§ 73-91

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미 복합업무(multi-disciplinary)를 제공하는 회사와 협력체(partnerships)가 나타나고 있다.³²³⁾

VIII. Solicitors와 Barristers의 업무

1. Solicitors

현재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는 10만명 이상의 실무활동을 하는 solicitors가 있다.³²⁴⁾ 법률서비스나 조력을 받기를 원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먼저 solicitor를 방문한다. 소송을 준비하는 단계의 업무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법률전문가로서 solicitor는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solicitors가 수행하는 업무에는 부동산양도업무, 유언작성업무(drafting of wills), 신탁업무감독과 신탁조정업무, 유언집행(administration of estates), 복지관련법제도에 관한 조언, 이민법상담, 이혼상담, 그리고 구류와 체포된 사람에 대한 조언과 조력 등을 한다. 게다가, 모든 solicitors는 법정에서 변론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적어도 가지고 있으며 법정에서 변호(advocacy)하는 것은 많은 solicitors들에게는 점차로 중요한 업무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개별 solicitors가 하는 업무의 종류는 아주 많고 다양하다. 하지만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 발전하는 것은 특성화되는 경향이다. 예를 들면, 많은 시내중심가(high-street)에 위치한 법률회사가 다양한 종류의 업무를 제공하는 반면, 독자적 개인사무실을 꾸리는 solicitor는 부동산양도업무 또는 신체상해(personal injury work)등 민사손해에 집중하고 있다. 공적자금이 적용되는 법률사무에 대한 금전계약은 점차로 비용효과를 강하게 요구하기에 비슷한 업무를 많이 수행함으로써

323) Richard ward & Amanda akhtar, English legal system,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375면.

324) The Law Society Annual Statistical Report 2005에 의하면 10만1천명 이상의 실무 solicitors가 있다고 한다.

이를 달성할 수 있게 되었다. 개인사무실을 하지 않는 solicitor들 중 현재 많은 solicitors는 기업업무와 상법적 문제만을 다루는 대형 법률회사 (large firms)에서 근무하기도 하고 다른 solicitors는 지방정부 또는 법률 센터에 고용되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³²⁵⁾

1) 송무수행권(The right to conduct litigation)

1990년 Courts and Legal Services Act가 소송업무를 수행할 권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³²⁶⁾

(a) 모든 법원에서 소장을 제출(issue proceedings)하는 것과

(b) 소송절차와 관련된 모든 부수적인 기능(ancillary functions)을 수행하는 것(예를 들면 소송과정에 출두하는 것: entering appearances to actions)

동법의 Section 28은 적절한 단체(an appropriate body)에 의해서 소송수행권(litigation rights)을 부여 받은 모든 사람은 당해 권리를 수행할 수 있다는 원칙을 세웠다. 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소송수행권(litigation rights)을 수여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은 단체는 the Law Society뿐이었다. 그러므로 이 분야에서 Solicitors가 향유하고 있던 독점권을 본법에 의해서도 유지할 수 있었지만 1999년 Bar Council(barrister협회)와 Institute of Legal Executives가 소송업무를 수행할 권리(litigation rights)를 당 협회에 소속될 회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단체로 추가되었다.³²⁷⁾ 그러나, Bar Council은 아직까지는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barristers에게 이런 송무권을 수여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³²⁸⁾

또한 동법은 다른 단체들도 송무권을 부여할 수 있는 “허가받은 단체 (authorized bodies)”가 될 수 있도록 Lord Chancellor에게 신청할 수 있

325) For a survey of recent trends, see the Law Society's Annual Statistical Report, 2003.

326) Section 119.

327) Access to Justice Act 1999, s 40.

328) 반면에 고용되어서 활동하는 barristers에게는 송무권이 부여되었다. Courts and Legal Services Act 1990, s 29; Schedule 4.

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2008년까지, 두 단체가 이런 절차를 성공적으로 이용하였다. 특허받은 특허대리인 협회(Chartered Institute of Patent Agents)와 상표권변호사 협회(Institute of Trade Mark Attorneys)가 그것이다.³²⁹⁾

2007년 법이 완전하게 시행되게 되면, 인가받은 규제단체(approved regulator)나 면허를 발부하는 공인된 면허기관(licensing authority granting a licence)이 송무수행허가(authorization to conduct litigation)를 부여하게 될 것이다.

2) 다른 독점권들: 부동산양도 및 유언집행

Solicitors가 행사하던 부동산양도법률관계에서 독점권은 1985년 Administration of Justice Act의 실행으로 공식적으로 끝났다. 동법 Part II은 공인부동산거래업자제도를 마련하고 부동산거래업자를 관리할 공인 부동산거래자위원회(Council for Licensed Conveyancers)를 설립하였다. 1990년 Courts and Legal Services Act의 규정은 부동산거래시장을 더욱 자율화하고 새로운 관리기관인 허가받은부동산거래자위원회(Authorised Conveyancing Practitioners Board)를 창설³³⁰⁾하도록 하였지만 본 규정의 적용은 수요의 부족을 이유로 무기한으로 연기되었다. 2007년 Legal Services Act는 부동산거래법률업무를 수행하는 직업군을 늘이고 다양화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

Solicitors는 유언검인(perform probate work)을 수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사실상의 독점권을 가지고 있었다. 1990년 법 Section 55는 Lord Chancellor에게 승인(approved) 받은 모든 단체(any organization)는 대가를 받고 유언검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합한 자(suitably qualified persons)에게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2004년 12월부

329) Chartered Institute of Patent Agents Order 1999, SI 1999/3137; Institute of Trade Mark Attorneys Order 2005/240.

330) Sections 34-53.

터 효력이 발생하였다. 본 조항은 2007년 법에도 규정되어 있다. 결국 본 제도의 시행으로 공인부동산거래업자(Licensed Conveyancers), 은행, 건설협회(building societies) 그리고 보험회사들은 유언검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3) 법정변론권(Rights of audience)

Solicitors는 서서히 송무수행, 부동산양도업무 그리고 유언검인업무에서 독점권을 서서히 잃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barristers가 누려왔던 영역에 진입하기 시작하였다. 그 영역은 바로 상급법원에서 변론하는 권리이다. 1990년 Courts and Legal Services Act 이전에는 Solicitors 단지 제한된 변론수행권을 가지고 있었다. 즉, Solicitors는 의뢰인을 위해 치안법원(또는 재판법원: magistrates' courts), 군법원(county courts) 그리고 대부분의 심판원³³¹⁾(tribunals)에서 변론할 수 있었다. 반면에 barristers는 대부분의 형사법원(Crown Court)사건과 고등법원(High Court)사건 그리고 항소법원(Court of Appeal)과 귀족원(House of Lords)에 오는 모든 사건에 대해 독점적 변론수행권을 누렸다.³³²⁾

1990년 법은 변론수행권은 자격여부(qualifications)와 적절하게 전문가를 규율하는 집단의 회원(membership of a properly regulated profession)여부를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설립하였다.³³³⁾ 본 법은 각자의 협회에 가입함으로써 solicitors와 barristers가 획득하는 변론수행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본 법은 Law Society(solicitor협회)와 Bar Council(barristers협회)에게 소속 회원에게 변론수행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허가하였다. Law Society가 회원에게 상급법원에서의 변론수

331) 심재처라고 번역되기도 하는데 비법조인으로 구성된 전문분야의 분쟁해결기관이다. 사법연수원, 영국법, 2008, 174면.

332) 통상의 이런 제한들은 법원자체의 관행으로부터 도출되었다. See, e.g. Practice Direction (Supreme Court: Solicitors: Rights of Audience) [1986] 2 All ER 226, [1986] 1 WLR 545; Practice Direction (Crown Court: Solicitors: Rights of Audience) (1988] 3 All ER 717, [1988] 1 WLR 1427.

333) Section 17(3).

행권을 부여하는 기준(criteria)은 1994년 승인되었다.³³⁴⁾

Bar Council은 상급법원에서 barristers가 독점하는 변론수행권은 수준 높은 변론의 질을 유지하고 강력하고 효과적인 Bar(barrister협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³³⁵⁾ Barristers는 Solicitors의 경우는 barrister와 같은 cab-rank(무차별수임)법칙이 없어서 solicitors는 자신들이 수행할 사건을 고를 수 있는 커다란 자유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이에 대하여 Law Society는 이미 solicitors가 하위법원에서는 변론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cab-rank법칙은 실무에서는 종종 효과가 없다고 하였다.³³⁶⁾ 결국, 새로운 제도는 1998년 Humphries가 예측한 것처럼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³³⁷⁾ 이전에는 소수의 solicitors가 상급법원에서 변론을 수행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1999년의 Access to Justice Act는 Law Society의 훈련요건을 완수한 모든 solicitors에게 모든 법정에서 완전한 변론수행권을 부여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문제를 간편히 하였고 2004년까지 2천명의 solicitors가 상급법원에서 변론수행권을 획득하였다.³³⁸⁾ 동법 section 36에서 확립된 원칙은 barristers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고용되어져 있던 barristers에게 적용되었던 변론수행권에 대한 제한도 대부분의 경우 철폐 되었다.³³⁹⁾ 또한 Institute of Legal Executives(전문법률사무소직원협회), 공인특허대리협회(Chartered Institute of Patent Agents) 그리고 상표권변호사협회(Institute of Trade Mark Attorneys)도 Lord Chancellor에 의해 회원에

334) 본 기준은 시행 전에 Lord Chancellor, the Master of the Rolls, the Lord Chief Justice과 the Vice-Chancellor의 승인이 필요하다.

335) Bar Council, The Quality of Justice - The Bar's Response (1989) at pp 128-46. 49

336) See Striking the Balance: The Final Response of the Council of the Law Society on the Green Papers (1989).

337) Preparing for the New Order in Court, The Lawyer, 21 July 1998 at p 14.

“상급법원에서 변론할 수 있는 권리는 취득하기 위한 자격요건으로 제시된 능력(competence), 경험, 그리고 훈련조건이 너무 높아서 오늘날 단지 624명의 solicitors가 상급법원에서 변론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338) Final Report of the Review of the Regulatory Framework for Legal Services in England and Wales (2004), at para 6.

339) Access to Justice Act 1999, s 37.

게 변론권을 수여할 수 있는 공인된 기관(authorized bodies)으로 지정되었다.³⁴⁰⁾ 이것의 의미는 위의 기관도 그들 회원에게 제한된 변론권을 수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³⁴¹⁾ 2007법하에서는 기타의 허가된 기관(any other authorized regulator)도 공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으며 면허제도로 법정변론권을 수여할 수 있다.

4) Solicitors와 고객의 관계

Solicitor의 권한은 고객에 의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고용의뢰(retainer)에서 출발하며 고용의뢰의 효과는 계약관계를 발생시킨다. 정확한 고객과의 관계는 고용의뢰에 사용되어진 용어에 달려 있으나 일반적으로 solicitors는 고객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는 대리인의 권한(authority to act as an agent)을 갖게 되고 완수하기로 한 업무에 대한 보수청구권(remuneration)을 갖는다. 고객과 solicitors의 관계는 단순히 계약법에 의해서만 지배되지는 않고 다양한 실정법규에 의해서 규제되고 있다.³⁴²⁾

Solicitor와 고객사이의 관계도 신뢰관계의 하나로써 solicitor는 그의 고객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선의(good faith)로 임하여야 한다는 형평법적 정의로부터 유래하는 의무가 있다. 하지만 계약문구가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Hilton Barker Booth and Eastwood라는 법률회사의 Walker경은 “고객에 대한 solicitor의 의무는 기본적으로 계약상의 의무이고 당 의무의 범위는 법률가고용의뢰(retainer)에 표현되고 암시된 내용에 의존한다. ... 이런 관계는 고객이 solicitor를 신뢰하고 신용을 지키는 관계이다. ... 이것은 신뢰를 바탕(fiduciary relationship)으로 한 관계... 고객의 이익을 위해 충심을 다하는 solicitor의 의무와 고객의 신뢰를 존중할 의무이며 고객과 solicitors의 신뢰관계에 바탕을 둔 일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340) Courts and Legal Services Act 1990, s 27(9); Schedule 4.

341) Institute of Legal Executives Order 1998, SI 1998/1077; Chartered Institute of Patent Agents Order 1999, SI 1999/3137; Institute of Trade Mark Attorneys Order 2005/240.

342) See generally, the Solicitors Act 1974.

고객과 solicitors는 계약관계에서 사용되어진 용어와 조건에 의해서 형성되어지고 특징 지워져야 한다.” 지적했다.³⁴³⁾

고객과 거래관계(transaction)에 들어가는 solicitors는 반드시 다음의 사항을 확실히 해야 한다. ① 그가 알고 있는 한도에 있어서 거짓없는 정직한 사실공개를 해야 하고 ② 금전거래조건들(financial terms)은 고객에게 공평해야 하며 ③ 그 거래관계가 부당한 영향력(undue influence)에 의해 야기된 것이 아니어야 한다. 위에서 언급된 것 중 어느 하나에만 위배되어도 그 금전거래관계는 무효화(set aside)된다.³⁴⁴⁾ 만약 고객이 solicitors에게 고객의 살아 생전동안 증여(inter vivos gift)를 한다면, 부당한 영향력이 있었다고 추정된다. Wright v Carter사건에서 신뢰관계에 기인한 법률조력관계(fiduciary relationship)가 끝난 후 증여가 약속되어졌거나 실현된 경우에만 이런 추정이 깨진다고 하였다.³⁴⁵⁾ 앞에서 언급된 부당한 영향의 추정은 유언장에 의해 제공되는 증여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지만 solicitor가 유언장을 준비하고 그가 많은 이익을 받을 경우에는 법원은 유언장작성자가 그 내용을 완벽히 알고 온전히 승인하였음을 확정적으로 증명(affirmative proof)할 것을 요구한다.³⁴⁶⁾

신뢰관계의 다른 특징은 solicitor와 고객사이의 대화내용에 대한 비밀 유지이다. 여기서부터 두개의 특권(two types of privilege)이 생긴다. 이것은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특권과 증거로서 폭로하지 않아도 되는 특권이다. 증거로서 폭로하지 않아도 되는 특권은 법률전문가의 특권(legal professional privilege)으로 언급 되고 있다. 그러나 이 특권은 더 이상 solicitors와 barristers에게 한정되지 않는다. 2007년 Legal Services Act Section 190은 변론을 하거나, 송무(litigation)를 수행하거나, 부동산양도업무를 하거나 유언집행을 하는 모든 허가 받은 집단에게

343) [2005] UKHL 8 [2005] 1 All ER 651, cited with approval in Conway v. Patiou [2005] EWCA Civ 1302, [2006] 1 All ER 571.

344) Wright v Carter [1903] 1 Ch 27 at 60, per Stirling LJ.

345) 앞의 글.

346) Wintle v Nye (1959) 1 All ER 552, [1959] 1 WLR 284.

이 특권을 확대하였다. 위에서 언급된 법률전문가특권은 기본적인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진다.³⁴⁷⁾

Solicitors와 고객사이의 대화는 고객의 권리, 책임, 의무 또는 구제에 관한 조언과 조력을 위한 목적이라면 비밀이 지켜져야 한다. Three Rivers District Council v Bank of England 사건에서 Scott 경은 법률조언은 의뢰인에게 법이 무엇인지 이야기 하는 것에 제한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법률조언에는 관련된 법률문제에서 어떻게 적절하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하는 조언하는 것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이전 사건에 Taylor L.J.가 취한 견해를 지지하였다.³⁴⁸⁾

Three Rivers 사건은 Bank of England에게 공개심리(public inquiry)를 받을지 여부에 대한 조언을 준 사건이다. 위 조언은 법률전문가의 특권에 적용을 받는다고 판시하였다. 하지만 법률전문가와 고객사이의 모든 대화가 법률전문가의 비밀유지 특권의 대상은 아니다. 예를 들면, 투자, 금전 상태, 혹은 다른 비즈니스관견 문제는 법률문제(legal context)라는 요소를 대부분 결하고 있다.³⁴⁹⁾ 당 판결은 법률전문가의 특권은 절대적이지만 고객에 의해서 포기될 수 있으며 또한 실정법에 의해 다르게 규율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³⁵⁰⁾ 현재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소송에 관한 대화에도 본 특권은 적용되고 다른 제3자(third parties)와의 대화에도 확장될 수도 있다.

2. Barristers

1) Inns of Court와 Bar에 가입

347) See R v Derby Magistrates' Court, ex parte B [1996] AC 487, [1995] 4 All ER 526; Three Rivers District Council v Bank of England (Disclosure) (2004) UKHL 48, [2004] 3 WLR 1274.

348) Balabel v Air India [1988] Ch317 at 330, [1988] 2 All ER 246 at 254.

349) [2004] UKHL 48 at [38], (2004) 3 WLR 1274 at [38], per Lord Scott.

350) 앞의 글, at [25].

잉글랜드에서는 4개의 Inns of Court중의 한 곳에 의해서 회원이 되도록 허용(called to the Bar)된 사람은 barrister로서 활동할 수 있다. 4개의 Inns of Court는 Lincoln's Inn, the Inner Temple, the Middle Temple 그리고 Gray's Inn이다. 이 4개의 Inns는 barrister직업만큼이나 오래되었으며 원래는 법률문제를 배우던 견습생(apprentices-at-law)의 숙소에서 유래되었다. 이들 Inns의 관할권(jurisdiction)은 사법부로부터 유래하며 사법부의 통제를 받는다.³⁵¹⁾

Bar(barrister협회)에 들어 올 수 있는 결정은 Bar의 일반위원회(General Council of the Bar)에서 한다. Barrister기준위원회(Bar Standards Board)가 Bar Council을 통제하려는 목표로 설립되었으며 활동하고 있다.³⁵²⁾ Bar Standards Board는 Bar를 양성하고 훈련하는 기준을 세우고 감독하는데 현재 재검토중이다. Barrister되길 원하는 자는 먼저 반드시 4개의 Inn중 어느 하나에 소속되어야 하고, 그 후에 실무법률교육과 연수를 시작할 수 있다.³⁵³⁾ 또한 지원자는 몇 가지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 조건들은 저녁식사에 참석해야 하고, 교육(educational days)에 참가해야 하며, 각각의 Inn에서 정한 주말거주(residential weekends)를 수행하여야 한다. 통상 판사 혹은 Bar의 원로회원으로 이루어진 법학원의 평의원(benchers of an Inn)이 전통적으로 학생선발과 barrister로 인정하는 절차(the call of barristers)에 대한 전적인 권한을 행사해 왔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현재는 Bar Standards Board의 권한이 되었다. 대부분의 경우는 Inns Council에 의해 임명된 규율심판원(disciplinary tribunals)에 이 권한이 위임되어지지만 원칙적으로 benchers는 훈련규율(disciplinary matters)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위 benchers의 결정에 대한 모든 불복의사는 Inns of

351) R v Gray's Inn (1780) 1 Doug K353, per Lord Mansfield; Lincoln v. Daniels [1962] 1 QB 237 at 250, [1961] 3 All ER 740 at 745, per Sellers J.

352) 자세한 사항은 see www.barstandardsboard.org.uk.

353) Entry to the Bar Working Party Final Report (2007) - 'the Neuberger Report': available at www.barcouncil.org.uk.

Court의 고문심판원('Visitors')에게 가게 된다. Visitors는 내부 심판원(domestic tribunal)으로서 고등법원(High Court)판사로 구성된다.

당 Inns에 입학하고자 하는 지원자는 법학사학위나 다른 학위와 법학 인증학위 (Graduate Diploma in Law)를 가지고 있는 등 학위자격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Bar의 실무교육(Vocational Course)을 마친 후, 실무 연수를 받는 barristers는 반드시 6개월씩 2단계로 이루어진 12개월의 실무수습기간을 마쳐야 한다. 두 번째 6개월의 수습기간동안 수습barristers는 독자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다.

2) Bar에서 실무업무 (Practice at the bar)

약 11,500명의 barristers가 단독 개업자(self-employed barristers)이다.³⁵⁴⁾ 대부분의 barrister들은 chambers에서 독립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Chambers는 barrister의 협동기구(associations of barristers)로서 공동의 시설과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개개의 barrister의 업무는 당해 barrister의 사무보조원(clerk)에 의해 조절되고 정리된다. 사무보조원은 barrister가 다른 약속과 업무로 재판에 참가할 수 없는 경우에 사건을 재배당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barristers의 기본적인 업무는 법정에서 변론하는 것이다. barristers는 모든 법정에서 모든 소송절차에 관련하여 법정에서 변론할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³⁵⁵⁾ 현재, 독자적으로 개업한 barristers는 Bar Council의 내부규정에 따라 송무(conducting litigation)를 수행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만 barristers는 법률문서를 준비하고 변론을 하는 것과 관련된 업무들을 수행한다.³⁵⁶⁾

법복(robles)을 입는 관행은 그 효용성에 대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계속되고 있고 일반적으로 변호인(counsel)은 적합한 차림새를 하지 않고서는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다.³⁵⁷⁾ 가모(wigs)를 착용하는 전통은 민사재판에

354) 73 Neuberger Report (2007), 위의 글, at para 6, p 14.

355) Courts and Legal Services Act 1990, s 31(1).

356) Code of Conduct of the Bar of England and Wales (8th edn, 2004) para 401.

357) 그 당시 Loar Chancellor가 실시한 법복착용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일반시민과 법원에 참

서는 중단되었다. Barristers는 재판관이 법복(robes)을 착용하지 않는 치안법원(magistrates' courts)등에서는 법복을 착용하지 않는다.

Barristers는 일반 변호인(junior counsel)과 왕립자문변호인(Queen's Counsel: QCs)로 나누어 진다. QC는 juniors가 일반 가운을 입는 반면에 실크로 된 가운을 입기 때문에 QC는 Silks라고 불리기도 한다. Queen's Counsel의 일원으로 임명되는 것은 Lord Chancellor의 조언을 토대로 왕(the Crown)이 임명한다. 임명의 기준은 능력과 경력이다. QC는 가장 어렵거나 복잡하거나 또는 중요한 사건에 대해 조언을 한다. 또한 Junior에 비하여 훨씬 더 많은 수입료를 받을 수가 있다. 예전에는 QC는 증거에 관하여 문서로서 의견을 표명하거나 문서를 준비하는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율의 지배를 받았으며 Junior를 대동하지 않고는 법정에 출두할 수 없었다. QC가 자신이 판단하기에 고객의 이익을 위하여 Junior를 대동하지 않는 것이 적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때는 이런 지시를 받아 들이 필요는 없지만 이런 예전의 형식적 규제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QC가 될 변호인의 임명에 관한 확립된 전통에 따라 QC임명은 매년 이루어졌지만 2003년에는 전문가검토의 결과(the outcome of a consultation exercise)가 나올 때까지 그 절차가 중단되었었다.³⁵⁸⁾ 전문가들의 검토를 통해 임명절차에 변화가 있었고 QC임명절차가 2005년에 다시 재개되었다. 현재는 QC는 solicitors, barristers, 일반인 그리고 판사로 이루어진 패널에 의해 선발되고 Lord Chancellor는 그 결정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을 행사할 수 없다. 전문가의 검토가 두 개층의 변호인을 두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공공의 이익에 반한다는 의견을 밝혔지만 전체적 결론은 QC라는 직함은 유용한 합격품표시(kitemark) 또는 변론의 수준을 담보할 수 있는 표시로서 작용한다고 결론을 내렸다.³⁵⁹⁾

석해본 사람들은 모두 복장에 대한 개혁을 지지하였다. ;ORC International, Public Perceptions of Working Court Dress in England and Wales (2002). See also: Lord Chancellor's Department, Consultation on Court Working Dress in England and Wales (2003) CP 05/03.

358) Department for Constitutional Affairs, The Future of Queen's Counsel (2003) CP 08/03.

3) Barrister와 고객의 관계

Solicitor와 고객의 관계는 직접적으로 법률의 규율의 많이 받는 반면에, barrister의 고객에 대한 의무는 대부분 자체 기준에 의해 통제받고 있다.³⁶⁰⁾ 역사적으로 barristers가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개업한 barrister가 고객과 계약규정을 마련할 수 없도록 한 보통 법상의 법리는 1990년 폐지되었다.³⁶¹⁾ 하지만 현실적으로 Bar Council 자체규정을 완하여 barristers가 solicitors로부터 계약조건과 사건에 대한 설명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뒤부터 실현되었다.³⁶²⁾ 또한 일부 사건에는 예외가 아직 있지만 2004년의 있었던 변화로 인하여 barristers도 현재는 일반 의뢰인으로부터 직접 사건을 접수할 수 있게 되었다.³⁶³⁾ 협회의 업무수행규정(Bar Council's Code of Conduct)은 승소율을 광고하거나 다른 경쟁자와 직접적인 비교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Barristers는 법이 허용하는 모든 방식으로 그들의 법률서비스를 광고할 수도 있다.³⁶⁴⁾

Barristers는 고객의 비밀을 유지할 의무를 지고 있으며, 고객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진행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 권한의 범위는 일반적인 대리원칙(ordinary principles of agency)의 적용받는다. 본 소송진행권에는 민사재판에서 고객의 권익을 위하여 소송절차를 타협하고 일정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무차별수임원칙(Cab-rank principle)은 barristers로 하여금 그가 실무에 종사하는 모든 분야에서 적절한 수임료가 지불된다면 어떤 사건이라도 수임하도록 의무를 지는 원칙이다. 그러나 바쁜 barrister는 손쉽게 다른 사건에만 전념할 수 있기에 실제

359) See Lord Falconer (Lord Chancellor), 661 HL Official Report (5th series) col WS54, 26 May 2004.

360) 80 See Code of Conduct of the Bar of England and Wales (8th edn, 2004).

361) Courts and Legal Services Act 1990, s 61(1).

362) The Code of Conduct: (The Contractual Terms of Work on Which Barristers Offer their Services to Solicitors'.

363) the Code of Conduct: 'The Public Access Rules'.

364) the Code of Conduct: 'The Public Access Rules'. 84 At para 710.

cab-rank principle이 실무에서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다.³⁶⁵⁾ 실제로 1973년에 24명의 QC가 IRA의 Old Bailey bombers를 위해 변론하는 것을 거부하였다.³⁶⁶⁾

위의 경우는 분명히 극단적인 예이지만 실제 변론을 수행할 수 없다고 한 경우의 진짜 이유를 알기는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barristers는 자신이 받고 싶지 않았던 사건들을 정기적으로 받기는 것이 강제되며 어떤 경우라도 cab-rank rule은 조건부수임료계약(conditional fee agreement) 혹은 계약관계에서 수임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³⁶⁷⁾

게다가, barristers는 Bar의 Code of Conduct에 의해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s)을 가져오는 사건이나 전문직업에 대한 곤란(professional embarrassment)을 가져오는 사건의 접수를 거부하도록 하고 있다.

4) 고용된 barristers

대부분의 barristers는 독자적으로 개업활동을 하거나 독립적으로 실무업무를 수행하지만, 소수의 barristers는 비록 소규모이지만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면서 월급을 받는 고용된 barrister로 활동하고 있다. 약 3,500명의 온전한 자격을 가진 barristers가 사경제주체, 검찰청(Crown Prosecution Service), 중앙정부법률서비스(Government Legal Service) 혹은 지방자치단체에 고용되어야 일하고 있다.³⁶⁸⁾ 그들 중 일부는 solicitors의 법률회사에 고용되어 있지만 정부와 기업부분에도 고용되어 일하고 있다. 고용된 barristers는 고용관계에서 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수를 받고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즉 대부분의 경우 고용 barristers는 고용자를 위해 일하고 있다. 그러나 solicitors에게 고용된

365) See the survey covered by Walson, 'Advocacy for the Unpopular' (1998) 162 JP 499. 87 Robertson, The Justice Game (1998) at p 379.

366) See the observations of Lord Steyn in Arthur JS Hall & Co v Simons [2002] 1 AC 615 at 678, [2000] 3 All ER 673 at 759.

367) Barristers는 cab법칙이 공적자금이 제공되는 사건에서도 폐지될 것을 원하였다.

368) Neuberger Report (2007), 앞의 글, at para 6, p 14.

barristers와 고용된 소송진행자(authorized litigator), 법률구조센터(legal advice centre), 그리고 법률서비스위원회(Legal Services Commission)에 고용된 barristers의 경우 그의 고용자의 고객(employer's clients)을 위해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다.³⁶⁹⁾

Bar의 Code of Conduct는 모든 고용barristers가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완수하면³⁷⁰⁾ 송무업무(conduct litigation)를 하도록 허용하고 있다.³⁷¹⁾ 고용된 barristers는 통상의 barrister가 수행하는 업무 이외에 증인들을 인터뷰하고, 증언을 청취하고 고용주의 자금을 관리할 수 있다. 그러나 Chambers에서 실무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은 barrister는 온전한 변론권을 수행하지 못할 수도 있다. Chambers에서 실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은 barristers는 실무수습기간(pupillage)을 마치고 적어도 3년 이상 경력 있는 변론인의 사무실(the office of an experienced advocate)에서 근무한 후에야 완전한 변론권(full rights of audience)을 행사할 수 있다.³⁷²⁾

369) Code of Conduct of the Bar of England and Wales, Part V. Employed barristers are not prohibited from supplying legal services to the public free of charge.

370) At para 504.

371) Code of Conduct: Employed Barristers (Conduct of Litigation) Rules.

372) 만약 실무수습기간을 마치지 못한 barristers는 20002년 전에 barrister가 되었다면 변론권이 없는 barristers로 고용될 수 있다. Richard ward & Amanda akhtar, English legal system,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383면.

IX. 영국에서 Solicitors와 Barristers양성과정³⁷³⁾

1. 영국법조인양성제도 개관

영국 법조인양성제도의 특징 중 하나는 법률전문가가 되는 다양한 경로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가장 일반적인 경로는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법률실무교육과정(Legal Practice Course: LPC), 수습계약(Training contract)과정을 거쳐 solicitor가 되거나, 법과대학 졸업 후 barrister의 실무교육(Bar Vocational course: BVC)과 견습기간(pupillage)과정을 통하여 barrister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전형적인 방법 이외에도 다른 경로가 존재한다. 예를 들면 대학과정에서 법학을 전공하지 않는 학생의 경우, 전공전환과정(conversion course)을 거쳐 일반직업자격시험(Common Professional Examination: CPE)에 합격한 다음, Legal Practice Course와 수습계약기간을 거쳐 solicitors가 되거나 Bar Vocational course와 수습기간을 거쳐 barristers가 될 수 있다. solicitors의 경우 반드시 대학학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학사학위 없이 법률사무실에 근무하는 법률사무원(Legal Executive)들은 법률사무직협회(Institute of Legal Executives, ILEX)³⁷⁴⁾가 시행하는 시험(Parts I and II of the ILEX examination)에 합격하면 회원(member)이 되고, 회원이 만25세 이상이 되고 법률사무실에서 5년 이상 근무하였고 협회의 시험에 합격한 후 2년 연속 근무한 경우에는 정회원(fellow)이 된다. ILEX의 member나 fellow는 법학교육단계를 마치기 위

373) Jacqueline martin & Chris Turner, Unlocking the english legal system, 2nd ed, 2008, 308-316면, 이근관, 영국의 사법시험제도에 관한 고찰, 법학 제45 제4권 222-242면, Gray slapper & David kelly, The english legal system, Routledge, 2010, 576-587면, Tim Vollans & Glenn Asquith, English Legal System,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104면 이하 참조.

374) ILEX는 solicitors사무실에 고용되어 일하는 만명이 넘는 법률사무원의 대표협회이다. 이 협회는 1963년 Law Soceity의 후원으로 설립되었다. Gray slapper & David kelly, The english legal system, Routledge, 2010, 538면.

하여 일반직업자격시험위원회(CPE Board)에 신청을 하여 CPE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그 다음은 solicitors지망생처럼 LPC과정을 이수해야하고, 다음 단계은 수습계약과정의 경우 fellow의 경우는 면제되지만 일반회원의 경우는 이수해야 한다. 이외에도 판사서기로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solicitors로 전환할 수 있는 경로도 열려있다.³⁷⁵⁾

2. Solicitors양성과정

표-solicitor양성개요

	Solicitor 법학사 과정	Solicitor 비법학사 과정	ILEX의 Fellow FILEX 과정
학력	- A Levels(수학능력시험) 또는 다른 유효자격 - 법학사학위(통상 LLB) 여기에 해당하는 법학사는 반드시 7개의 기초과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함	- A Levels(수학능력시험) 또는 다른 유효자격 - 학사학위	- GCESs, A Levels(수학능력시험) 또는 다른 유효자격 - ILEX의 전문증명(Professional Diploma)과 법률회사의 고용상태
전환과정		일반직업시험(Common Professional Examination) 소위 법학자격인정시험(Postgraduate or Graduate Diploma in Law) - 7개의 기초법학과목과 하나의 법학과목(an extended project)	ILEX의 고등직업자격(Higher Professional Diploma)과 법률회사의 고용
실무교육	Law Society에 학생회원으로 참여	Law Society에 학생회원으로 참여	- ILEX의 회원 - ILEX Fellowship

375) 이근관, 앞의 글, 223.

자격			(최소 만25세이상으로 모든 시험을 통과한 후 적어도 2년이상을 그리고 총 5년이상 solicitor의 감독하에서 고용되어 업무수행)
실무 교육	실무교육과정 (Legal Practice Course)	실무교육과정 (Legal Practice Course)	실무교육과정 (Legal Practice Course) Fellows가 아닌 ILEX의 회원은 CPE/GDL시험을 LPC이전에 보아야 될 수도 있으며 이때는 반드시 수습계약 (Training Contract) 도 완료해야한다.
실무 연수	실무수습계약(Training contract)	실무수습계약(Training contract)	
	전문기술과정 (Professional Skills Course)	전문기술과정 (Professional Skills Course)	전문기술과정 (Professional Skills Course)
서류 작업	- Supreme Court의 solicitor명부(Roll of Officeers)에 기재	- Supreme Court의 solicitor명부(Roll of Officeers)에 기재	- Supreme Court의 solicitor명부(Roll of Officeers)에 기재

위 표에서 언급된 solicitors의 양성과정을 단계로 나누면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1) 학위과정 (Academic stage)

법률전문가가 되기 위한 1차적인 과정은 대학에서 법학학사를 취득하거나 법학이외의 학문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들을 위한 1년간의 전공전환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2005년에는 만3천명이 넘는 학생들이 법학도가 있었으며 만2천명이 넘

는 학생들이 법학사를 취득하고 졸업하였다.³⁷⁶⁾ 2006년 7월 31일 기준으로 10,159명의 학생이 Law Society의 학생회원으로 가입하였다. 이들의 63%는 여성이었으며 24.7%는 소수인종출신이었다. 법학을 전공하는 학생의 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여성과 소수인종의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표- 법학전공자의 증감과 남녀비율

연도	남성	여성	총합
1997	4,016	4,876	8,892
2000	3,807	5,517	9,324
2005	4,392	7,692	12,084
2005와 2000의 변화	+15.4	+39.4	+29.6

법학사의 학위과정은 3년이다. 1990년의 Courts and Legal Service Act에 의하면 solicitor와 barristers지망생에 대한 자격요건은 Lord Chancellor의 법학교육과 직무윤리에 관한 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 on Legal Education and Conduct)의 감독을 받아서 Law Society와 General Council of the Bar가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두 단체는 서로 협력하여 법학사 학위 취득 또는 인가된 CPE합격으로 구성되는 법학교육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와 감독기능을 행하고 있다. 위 자문위원회는 1999년 Access to Justice Act에 의해 법률서비스자문패널(Legal Service Consultation Panel)로 대체되었고 당 패널이 법률교육과 윤리기준을 마련하고 유지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2001년 9월부터 발효된 “학부학위 취득을 통한 변호

376) Jacqueline martin & Chris Turner, Unlocking the english legal system, 2nd ed, 2008, 313면.

인양성을 최초단계 또는 법학교육단계의 이수에 관한 Law Society와 Bar의 공동고시”(A joint Statement Issued by the Law Society and the General Council of the Bar on the Completion of the Initial or Academic Stage of Training by Obtaining an Undergraduate Degree)에 포함되어 있다.³⁷⁷⁾

이 고시는 3년 과정을 이수하고 취득한 법학사 학위가 변호사 양성의 다음 단계인 실무교육관계로 나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위 고시의 기준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Law Society와 the General Council of the Bar가 공동으로 승인한 대학에서 법학학위를 취득해야한다. 협회들이 위의 승인을 함에 있어서 법학교수회(Association of Law Teachers), 법과대학장협의회(Committee Head of University Law School), 법학교수공무원협회(Society of Public Teachers of Law) 등의 교수단체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공동고시에 규정되어 있는 주요 기준은 학생의 학업성취도가 법학사 기준지침(QAA Benchmark Standards for Law Degrees in England, Wales and Northern Ireland)에 규정된 최저성취도인 3등급이상일 것, 3년 또는 4년의 학부과정 중 법학과목의 이수가 2년 이상일 것³⁷⁸⁾, 법학과목 이수에 사용된 2년 기간 중 최소한 1년 반은 기본법률지식(foundation of Legal Knowledge)습득을 위한 과목을 수강하였을 것 등이다. 공동고시에서 밝힌 기본법률지식 습득을 위한 과목은 아래와 같다.

- ① 헌법, 행정법 및 인권법을 포함하는 공법
- ② 유럽연합법
- ③ 형법
- ④ 계약법, 부당이득 및 불법행위법을 포함하는 채권법
- ⑤ 물권법
- ⑥ 형평법 및 신탁법
- ⑦ 법률문헌조사 훈련

377) 이 고시의 전문은 www.legaleducation.org.uk에서 참조.

378) 3년 과정의 경우 취득학점의 2/3이상, 4년 과정의 경우 취득학점의 1/2 이상이 법학과목일 것.

Law Society와 Bar Council이 정기적으로 각 법과대학에 외부평가단(external examiner)을 파견하여 대학들이 공동고시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는지의 여부를 심사한다. 심사의 결과 위의 요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대학에서 취득한 법학사 학위가 실무교육단계의 전제조건을 만족시키는 교육기관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

법과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입학시험을 치지 않고 일반교육증명서(General Certificate of Education) 수학능력(Advanced Level: A Level)시험성적, 출신학교 추천서, 면접 등을 토대로 학생을 선발한다. 2004년 11월부터 옥스퍼드, 캠브리지를 비롯한 8개 학교들이 법과대학입학시험(National Admission Test for Law)을 실시하고 있다.³⁷⁹⁾ 위의 시험은 총 2시간 15분의 온라인시험으로 객관식 95분과 에세이 40분 시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학대학은 인기 있는 전공으로서 다른 유럽국가에 비하여 입학 어려운 편인 반면, 졸업은 독일과 프랑스에 비하여 쉬운 편으로 약 90%학생이 졸업하고 있다. 물론, 대학의 명성에 따라 입학난이도는 크게 다르다.

앞에서 본 것처럼 법학학위를 취득한 학생들이 모두 실무교육관계로 나가는 것은 아니다. 법률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출신학교의 명성뿐만 아니라 학업성적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영국 대학교에서는 성적을 3단계 4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1등급과 2등급상, 2등급하, 그리고 3등급으로 나누고 있다. barrister협회의 경우 최소대학성적을 2등급하로 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법과대학에서 3등급을 받은 학생은 원칙적으로 BVC단계로 진입할 수 없다. 실제로 있어서 2등급(하)를 받은 학생의 경우에도 성공적으로 변호사로 성장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런 사정은 solicitor에게도 마찬가지로 법과대학의 졸업성적이 변호사시장에서 잠재적 진출자 중 상당수를 걸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³⁸⁰⁾

379)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사이트 참조. <http://www.lnat.ac.uk/>

380) Nicola Laver, Blackstone's Guide to Becoming a Lawyer, Oxford, 2000, 19면.

2) 전공전환과정(Conversion Course)

영국에서는 학부과정에서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학생과 외국에서 학위를 한 학생에게도 법률전문가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학부에서 법학이외 분야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학은 1년의 전공전환과정을 거쳐 CPE에 합격하면 법학사와 동일하게 실무교육단계로 진입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한다. CPE에 합격하면 Graduate Diploma in Law 또는 Postgraduate Diploma in Law가 수여된다. CPE과정은 법학방법론,과 7개의 핵심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학방법론은 법의 개념, 영국법제사, 판례 및 제정법의 비판적 독해방법, 제정법해석의 기술, 판사들에게 선례를 따르거나 구분하도록 설득하는 기술, 법학도서관 및 컴퓨터화된 데이터 베이스를 활용하여 판례 및 법령 등을 조사하는 방법 등을 배운다. 7개의 핵심과목은 계약법, 형법, 형평법과 신탁법, 유럽연합법, 부동산법, 공법 및 불법행위법으로서 정규 법과대학 3년 과정을 통하여 이수해야만 하는 법률기본과목을 모두 포함한다.³⁸¹⁾

3) 실무교육과정³⁸²⁾

인증된 법학학위를 취득하거나 전공전환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하고 법학사자격증을 받은 사람들 중 solicitor가 되려는 자는 먼저 Law Society에 학생회원으로 등록한 다음 1년간 법률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현재 31개의 법과대학 및 법학교육기관에서 LPC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LPC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Law Society 내의 법률실무교육위원회(Legal Practice Course Board)의 인가를 받아야만 한다. 이 위원회는 LPC실시기관들이 인가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감독하며 정기적인 현장검증을 통하여 이들 기관에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현재 등급은 특급(excellent), 최우수(very good), 우수(good), 양호(satisfactory), 미흡(unsatisfactory)의 5단계로 구별되고 있다.

381) 이근관, 앞의글, 229면.

382) 이근관, 앞의글, 236-237면.

LPC과정에서의 교육내용은 개별교육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대표적인 LPC교육기관의 하나인 College of Law의 교육과정은 필수과목, 실무기술, 핵심과목, 선택과목으로 구분되어 있다.

① 필수과목은 기업법과 실무(bossiness law and practice), 소송과 변론(litigation and advocacy) 그리고 부동산법과 실무(property law and practice)를 포함하고 있다.

② 실무기술분야는 변론(advocate), 상담과 조언(interview and advising), 법률실무문헌조사(practical legal research), 문제해결과 IT(problem solving and IT), 법률문서작성(writing and drafting)

③ 핵심과목은 법률심무와 관련된 모든 분야를 지칭하는 과목으로서 기업 및 변호사회계(bussiness and solicitor's accounts), 유럽연합법(European Union Law), 인권법(Human Rights), 유언장검인 및 상속재산의 관리(probate and administration of estates), 직업윤리 및 의뢰인배려(profession conduct and client care) 그리고 소득세법(revenue law) 등이 포함되어 있다.

College of Law에서는 다양한 선택과목³⁸³⁾이 제공되고 있으며 학생들은 이들 과목중 3과목을 선택하여 수강한다.

College of Law의 경우, 필수과목 및 선택과목의 평가는 시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통상 시험은 오픈북 형식으로 치러진다. 실무기술 중 구두로 행하는 것은 학생의 실기를 비디오로 촬영하여 평가하고 나머지는 실제로 작성한 문서 등을 평가한다.

4) 수습계약(training contract)

solicitor양성의 최종단계는 2년간의 수습계약과정이다. 이 과정은 과거에는 articles라고 불렀지만 1993년에서 Law Society Finals를 LPC로 바

383) 기업인수, 심화 부동산법과 실무, 심화 형사실무, 은행거래 및 차입을 통한 자금조달, 상사분쟁해결, 상사법, 노동법과 실무, 가족법과 실무, 주택관련법, 개인상해와 의료과실소송, 개인고객을 위한 유언장, 신탁 및 상속대비, 공공기업 과 주식발행, 사회보장법 및 이민법이다.

꾸면서 articles도 training contract로 개칭하였다. 사실 이 단계에서 진정한 의미의 실무연수가 이루어진다. 수습계약직의 획득은 solicitor자격을 부여 받기 이전의 교육과 훈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계로 여겨진다.³⁸⁴⁾

Solicitor지망생은 Law Society로부터 인증 받은 수습실시기관(training establishment)과 수습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실제의 수습계약은 Law Society가 작성한 표준 계약의 내용 중 어느 것도 삭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수습책임자(training principal)와 수습변호사는 수습이 시작된 지 3개월 이내에 수습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중요한 점은 수습계약을 체결한 지 28일 이내에 이를 협회에 등록해야 한다.

수습 기간중 최소한 3개의 개별 범영역에서 실무경험을 쌓을 것을 협회는 요구하고 있다. 대부분의 법률회사의 경우 6개월씩 다른 부서(seats)에서 수습하는 것이 보통이다. 수습기간 중 수습변호사는 solicitor자격을 취득한지 5년 이상 된 solicitor의 감독 및 훈련을 받게 된다.³⁸⁵⁾ 또한 2007년 Law Society의 수습관련 규정에 의하면 런던 중심부에 근무하는 수습solicitor에게는 17,660파운드 그 외의 지역에서 근무하는 경우는 최소 15,820파운드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³⁸⁶⁾ 수습기간 중에는 20일 동안 전문기술훈련과정(Professional Skills Cours)도 이수해야 한다.³⁸⁷⁾

수습기간 중 수습기관 내부적으로 최소한 3번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수습기관이 수습solicitor를 훈련시키고 있는지에 대하여 Law Society에서 현장조사도 실시하고 있다. 현장조사(spot checks)는 Law Society에 설치된 수습감독패널(Training Panel of the Law Society)이 행한다. 또한 법학교수, Law Society의 이사, Solicitor로 구성된 수습계약심사그룹

384) Nicola Laver, 앞의 글, 67면.

385) Laver, 앞의 글, 66면.

386) Jacqueline martin & Chris Turner, Unlocking the english legal system, 2nd ed, 2008, 314면.

387) Tim Vollans & Genn Asquith, English legal system,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108면.

(Training Contract Review Group)에서는 수습계약제도의 현상을 검토하고 이의 개선을 위한 권고를 행한다. 그런데 수습계약제도의 요건은 장래에 폐지되거나 개정될지도 모른다. Solicitor규제국(Solicitor's Regulation Authority: SRA)³⁸⁸⁾이 수습계약의 필요성에 대하여 조사하기 시작하였고 급진적인 변경안을 내놓았다. 2008년 9월 시범계획(pilot scheme)이 46개의 법률회사에서 시작되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방법의 훈련방식이 있다. 첫 번째의 것은 현존하는 수습계약과 유사하지만 수습중인 자가 사무중심의 학업성취도(workbased learning outcomes)라고 알려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엄격한 시험기준을 달성하지 못하면 solicitor자격을 부여받을 수 없다. 다른 방식은, 법률사무직종사자(paralegal)에게는 현재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면 수습계약없이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많은 법률회사가 당 계획을 채택하고 있으며, 만약 본 계획이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2011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³⁸⁹⁾ 그런데 세계최대의 법률회사중 하나인 Linklaters는 그 계획에서 동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³⁹⁰⁾ 그리고 특수한 경우에는 현재의 24개월보다 더 줄어든 자격획득기간이 될 수도 있는 안이 마련되었다.

실무를 하기 위해서는 Law Society가 발행하는 실무자격증(practising certificate)을 발부받아야 하는데 2009년 기준으로 1,180파운드였다. 또한 실무수행기간에 따라 기부금(contribution)을 납부해야 하는데 2009년에는 최고390파운드였다. 이 금전은 SRA가 운영하는 기금이 되어 solicitor의 업무상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은 고객의 손해를 보전하는데 사용된다. 게다가 solicitors는 매년 면책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현재, 모든 solicitors는 반드시 정기적으로 CDP(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로 알려진 평생직업교육(regular continuing

388) SRA는 2007년 1월에 Law Society의 독립된 규제기구로서 설립되었다. 이전에는 Law Society Regulation Board라고 알려진 기구가 독립성을 확보하고 분명히 하기 위해 명칭을 변경하였다.

389) Gray slapper & David kelly, The english legal system, Routledge, 2010, 577면.

390) The Lawyer 2b, 2009.10.21.

education)을 받아야 한다. CDP는 시험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수업을 통하여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있다. 매년 solicitors는 11월 1일에 10월 31일사이인 CDP년도에 16시간의 CDP훈련을 마쳐야 한다. 하나의 CDP 포인트는 1시간의 훈련시간과 동일하다. 새롭게 solicitor가된 새 회원은 Law Society의 관리코스1(Management Course Stage 1)을 3번째 CDP해가 끝나기 전에 반드시 이수해야한다.³⁹¹⁾

3. Barristers양성과정

2006년 1월에 Bar기준위원회(Bar Standard Board: BSB)가 설립되었다. 당 위원회는 종전에는 Bar Council이 모두 담당하였던 대표기능과 규제 기능을 분리하면서 설립되게 되었다. 당 위원회는 Bar Council의 독립위원회로서 공공의 이익과 고객의 이익을 위하여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barrister가 되는 방식을 규제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2006년 12월 기준으로 14,623명의 barristers가 실무에 종사하고 있으며 그 중 11,818명이 독립 개업자이고 346개의 Chambers가 있다. 현재 66.6%가 남성이며 11.2%는 소수인종출신이다. barrister중 여성의 비율이 점차로 높아지고 있다. 2006년 1,640명의 신규 barrister중 51%가 여성이었다.³⁹²⁾ Solicitor에게도 상급법원에서 변론권을 행사할 수 있는 Higher Rights Certificates가 도입된 후 Bar에 가입하는 barristers의 수가 증가하였다.³⁹³⁾

1) 학문과정(Academic Stage)

법과대학에서 법학사 학위를 취득하였거나 법학이외의 분야를 전공하였지만 전공전환과정을 거쳐 CPE를 통과한 사람은 먼저 런던에 있는 4개의 Inns of Court중 하나에 입소하고 barrister실무교육(Bar Vocation

391) Gray slapper & David kelly, The english legal system, Routledge, 2010, 578면.

392) Jacqueline martin & Chris Turner, Unlocking the english legal system, 2nd ed, 2008, 326면.

393) 실제로 실현하지 않던 barrister의 수가 줄어 들었다. 앞의 글, 326면.

Course: BVC) 및 수습기간(pupillage)과정을 이수함으로써 barrister가 될 수 있다. 현재는 Bar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대학을 졸업한 성인학생에 제한된다. 통상은 barrister는 법학사학위를 가지고 있고 1년 동안 직무교육을 마치고 Bar시험을 본다. 비법학사들은 1년 동안 CPE공부를 하고 통과한 자는 Bar시험을 볼 수 있다. Bar시험에 통과한 학생은 4개의 Inns에 부름을 받고 입소한다. Inns에 부름을 받은 것은 실무교육을 받는 전제조건이다.

2) Barrister의 실무교육 (Bar Vocational Course: BVC) 또는 BPTC

이전에는 BVC는 Inns에만 개설되어 있었으나 1997년부터 4개의 Inns 이외에도 BBP Law School, College of Law, Cardiff Law School, Nottingham Law School, University of the West England, Manchester Metropolitan University를 포함하여 총 8개의 기관이 BVC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BVC라는 명칭은 2010년까지 유지되고, Bar Professional Training Course(BPTC)로 바뀌고 full time인 경우는 1년, 파트타임의 경우는 2년에 마칠 수 있다.³⁹⁴⁾

Solicitor와 달리 Barrister의 경우는 지원자격을 대학졸업성적 2등급 이상의 자로 제한하고 있으며 3등급에 해당하는 경우는 Bar의 특별한 허가를 받아 barrister 실무교육단계에 진학할 수 있지만 이러한 허가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1) 코스의 형태와 평가

BVC 또는 BPTC의 목적은 barrister를 지원하는 학생이 직업수행에 필요한 기술, 소송과 증거에 대한 지식(knowledge of procedure and evidence), 태도와 이런 것을 준비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고 특히, 12개월의 수습기간(pupillage)동안 더 깊은 실무심화를 하기 위해서 이다.³⁹⁵⁾

394) <http://www.barstandardsboard.org.uk/>

(i) 수업과목

BPTC에서 가르치는 주요한 기술(Skills)은 아래와 같다.

판례조사기술(Case Work Skills)

법률문헌조사(Legal Research)

일반법률문서작성(General written skills)

법률문서작성실습(Opinion-writing)

인간관계기술(Interpersonal Skills)

대화기술: 고객과 면담(Conference Skills: interviewing clients)

대체적분쟁해결방법(Resolution of Disputes Out of Court)

변론법(Advocacy: court or tribunal appearances)

BPTC에서 가르치는 주요한 과목은 다음과 같다.

민사소송과 구제(Civil Litigation & remedies)

형사소송과 형량(Criminal Litigation & sentencing)

증거법(Evidence)

직업윤리(Professional Ethics)

그리고 6과목이상에서 선택한 선택과목 2개를 포함한다. 선택과목은 심화민사소송, 심화형사소송, 상사실무, 가족법실무, 이민법, 재판실무, 심판원실무 등 다양한 과목들이 개설되어 있다.

(ii) 평가(Assessment)

학생들의 평가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며 교육기관별로 상이하다. 하지만 대체로 아주 중요한 부분의 지식은 객관식으로 평가되어지고, 법률문서작성평가는 서술형으로 이루어지며 변론기술, 대체적분쟁해결기술 그

395) 더 상세한 자료는 다음의 사이트 참조. <http://www.barstandardsboard.org.uk/>

리고 면담기술 등은 실험상황에서 비디오촬영의 형식으로 평가된다. 2012년부터 BSB가 민사소송(Civil Litigation), 형사소송(Criminal Litigation), 그리고 법조윤리(Ethics)의 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2) BPTC 또는 BVC의 통과

모든 BPTC과정을 제공하는 기관은 BAR Standards Board의 확인(validation)을 받아야 한다. 이 확인을 통해 Bar는 개별 BPTC를 제공하는 기관이 Bar가 요구하는 실무교육과정에 적합한지를 평가한다. 적합성판정은 당기관의 수업결과, 내용 그리고 당기관의 자원이 Wood Report에서 Bar Council이 마련한 기준을 만족하는지에 달려 있다. Wood보고서는 현재 BPTC핸드북의 기초자료로 사용되고 있다. 모든 BPTC코스는 BPTC산하위원회인 교육및훈련위원회(Education & Training Committee)의 현장점검을 받게 된다. 당 위원회는 평가의 기준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BSB의 외부점검단(Bar Standards Board's External Examiners)과 함께 평가의 실시와 실행을 감독할 것이다.

BVC과정에 진학한 사람 중 매년 80-90%가 수료하고 있으며 BVC과정을 성공적으로 수료하면 자신이 속해 있는 Inns로부터 barrister자격을 부여 받는 데 이것을 “Call to the Bar”라고 부른다. BVC과정을 성공적으로 수료하고 barrister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barrister양성과정의 끝은 아니다. 현재는 barrister자격의 취득과 동시에 barrister라고 칭할 수 있지만 최소한 5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barrister(pupil master) 밑에서 12개월 동안의 견습기간을 거치지 않으면 barrister로 활동할 수 없다. 그런데 새 개혁안은 수습기간을 마칠 때까지 Call을 연기하고 있다. 즉, 새 개혁안에 따르면 barrister가 되기 위해서는 수습기간은 필수인 전제가 된다.³⁹⁶⁾

396) Tim Vollans & Genn Asquith, English legal system,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109면.

3) 견습기간(pupill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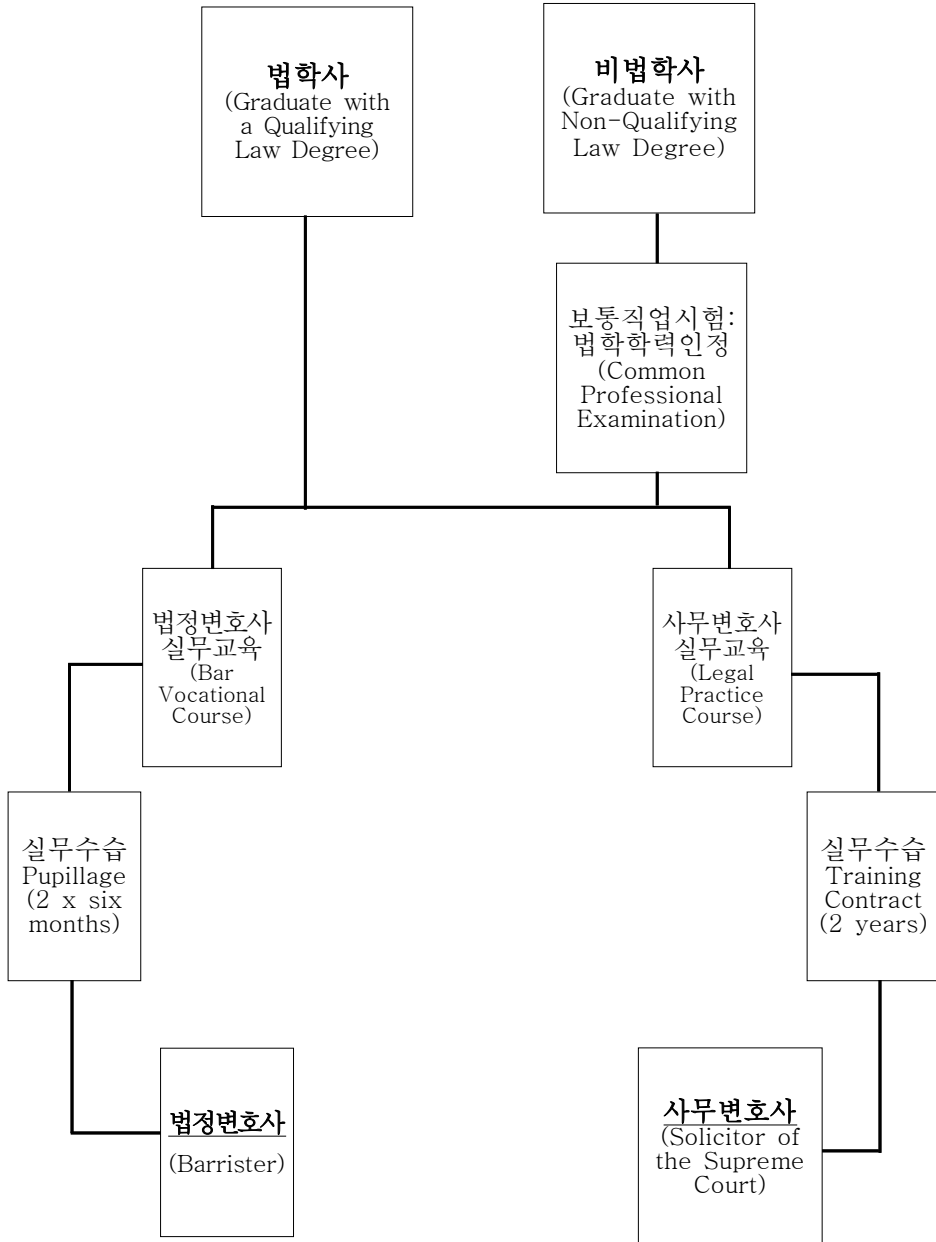
현재는 위의 단계를 마친 학생은 pupillage라고 알려진 견습단계로 나가게 된다.

견습기간은 통상적으로 6개월 단위의 계약을 두 차례 체결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처음 6개월 동안은 자신의 명의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고, 단지 소송서류의 작성이나 변론준비를 돕는 일을 하며, 후반 6개월 동안에는 견습지도barrister의 허락을 얻어 간단한 사건을 수임하여 자기의 명의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법정에서 변론도 할 수 있다. barrister로 실무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12개월간의 pupillage는 필수이다. 따라서 새로 barrister가 된 신임barrister는 1년 동안 도제식교육을 해줄 경력 barrister를 찾아야 한다. 현재는 pupillage를 제공하는 모든 barrister는 온라인(www.pupillages.com)에 채용가능 광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일단 pupillage단계를 끝마치면 barrister는 Chambers에 자리를 알아 봐야하는데 chamber에서 일하는(tenancy) 것은 아주 경쟁이 치열하다.

학생들이 Bar의 관습과 에티켓을 익히게 하기 위해 개별 소속된 Inn에서 일정한 횟수의 저녁식사를 해야 한다. 이 저녁식사시간을 이용하여 학생들은 Inns 어떻게 운영되는지 어떤 행동양식이 필요한지 등을 배운다. 이런 것에는 법학교육기관의 학비이외에 부가적인 지출요인이 된다. 장학금의 기회는 드물지만, 학생들은 학자금융자등을 통해서 수습기간의 비용을 스스로 마련하고 있었다. 2002년 3월 Bar Council이 pupillage자금과 관련 개혁을 하여, 매달 833.33파운드를 반드시 수습기회제공자(pupils)가 수습barrister에게 지급하고 또한 적절한 여행경비도 지급하도록 하였다.³⁹⁷⁾

397) Jacqueline martin & Chris Turner, Unlocking the english legal system, 2nd ed, 2008, 327면.

표- Barrister와 Solicitor의 전형적 양성과정



X. Solicitors와 Barrister의 기능중복과 융합³⁹⁸⁾

역사적으로, 19세기 변론권과 직접적인 고객접근권에 대한 협약을 반영하여 solicitor와 barrister의 역할은 아주 분리된 것이었다. 하지만 20세기에서 그 엄격한 분리에 대하여 융합을 지지하는 쪽으로 발전하였다. 양 법률전문가직렬을 분리하는 것에 대한 중대한 비판은 일반인의 반응과 비용문제에 있었다.

Solicitor를 일반적으로 접촉하던 일반 의뢰인은 그 사건의 변론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된 barrister에게 의뢰되어졌다. 일반 의뢰인들은 특정사건에서 독립적이고 전문화된 의견을 제시하는 독립활동을 하는 barrister를 고용(instructing)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다. 즉, 일반인들은 분화된 두 전문가들과 접촉해야 하는 것이 필요 없는 비용을 더 사용하게 만든다고 생각했다. Zander 교수는 solicitor(소송을 준비하고 변론인을 고용하는 것)와 barrister(법정에 나와 변론하는 것)를 동시에 고용해야 하는 것을 마치 한 방향을 가는데 두 대의 택시를 불러서 2개의 택시미터를 돌리는 것에 비유하였다. 두 직업단체들은 몇 가지 원칙의 융합과 합체를 거부해왔다. 예를 들면, 변론과 법률조사의 기준, 사법적 비밀 유지, 그리고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 등이 그 예다. 그런데 1990년 Courts and Legal Services Act와 1999년 Access to Justice Act의 시행으로 두 전문직업군 사이의 구별은 점점 벌어지게 되었다. 두 전문직업단체의 회원은 같은 변론권과 모든 단계의 법정에서 변론자로서 활동할 자격이 부여되어 있다. 또한 barrister와 solicitor는 둘 다 직접 의뢰인에게 조언과 조력을 줄 수 있고 소송문서를 작성·준비할 수 있다. 이런 결과로서, 두 법률전문가의 차이점은 실제 이런 권리를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에 달려 있다. Barristers를 고용하는 것(instructing)이 비용적으로

398) Tim Vollans & Genn Asquith, English legal system,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109-110면.

더 비싸지 않다는 것이 증명되면 점점 더 적은 수의 solicitor가 상급법원에서 변론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현실에서 대형 조직이나 회사를 제외하고 일반 의뢰인은 직접 어떤 변호인(counsel)을 직접 고용해야 하는지 알기 힘들 것이다. 그러므로 융합에 대한 요구는 점차 작아진다.

<저자 이력>

김성배

대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외국법령
2010-2

영국의 barrister와 solicitor의 관계연구

발행일 2010년 10월 4일 발행

저 자 김 성 배

발행인 조 용 근

발행처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홈페이지 <http://www.kacpta.or.kr>

주 소 (137-870) 서울 서초구 서초3동 1497-16

전 화 (02)521-9544 팩 스 (02)521-9459

<비매품>